



# 이민자 고용실태와 정책방향

김새봄

KEIS

# 이민자 고용실태와 정책방향

김새봄

KEIS





# 발간사

---

이민자가 한국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우리 사회로 유입되는 외국인의 규모가 이전보다 크게 줄었지만,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구구조 변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정책은 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입니다.

이 보고서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정책의 수립과 보완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국내에 거주 중인 이민자의 특성과 경제활동 현황을 분석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특히 분석 대상으로 취업 관련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하여 결혼이민, 영주, 재외동포 등 다양한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를 모두 분석 대상에 포함하여 이민자의 다양한 특성을 이해하고 이민자 대상 노동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특징점이 있습니다. 또한,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EIS)을 통해 2004년 8월부터 시행되어 온 고용허가제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와 외국인력 사업담당자, 관련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통계자료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인력 정책의 한계점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정책 수립과 보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 연구나 사업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보고서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 귀한 의견을 해주신 내외부 심의위원님들과 면접조사에 참석해주신 사업체 관계자, 외국인력 사업담당자, 전문가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2021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나 영 돈

## [ 차례 ]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대상 .....	1
제2절 연구의 구성 .....	3
제2장 이민자 규모와 외국인력 정책 .....	4
제1절 외국인의 국제이동 추이 .....	4
제2절 상주이민자의 규모와 인적 특성 .....	12
제3절 외국인력 정책 현황과 발전 방향 .....	25
제3장 이민자의 경제활동 실태와 고용구조 .....	47
제1절 이민자의 경제활동 실태 .....	48
제2절 이민자의 산업 및 직업별 고용구조 .....	59
제4장 이민자의 이직 경험과 임금 분포 .....	74
제1절 이민자의 이직과 근속 .....	74
제2절 이민자의 월평균임금 수준과 결정요인 .....	86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	100
참고문헌 .....	104

## [ 표 차례 ]

〈표 2-1〉 성별 및 국적별 외국인 입국자 현황 .....	8
〈표 2-2〉 외국인 입국자의 체류자격 구성 .....	10
〈표 2-3〉 취업 관련 체류자격 외국인 입국자의 국적 구성 .....	11
〈표 2-4〉 연도별 외국인주민 규모: 2015~2020년 .....	13
〈표 2-5〉 국내 거주 이민자의 국적 구성 .....	15
〈표 2-6〉 국내 거주 이민자의 연령대 구성 .....	17
〈표 2-7〉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 2020년 .....	18
〈표 2-8〉 특성별 이민자의 교육수준: 2020년 .....	20
〈표 2-9〉 체류자격 및 출신국적별 이민자의 교육수준: 2020년 .....	21
〈표 2-10〉 인적 특성별 이민자의 한국어능력: 2020년 .....	23
〈표 2-11〉 체류자격 및 출신국적별 이민자의 한국어능력: 2020년 .....	24
〈표 2-12〉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업종별 도입 쿼터 현황: 2021년 ....	31
〈표 2-13〉 일반고용허가제 근로계약 체결 현황 .....	31
〈표 2-14〉 일반고용허가제 도입 건수 현황: 도입 구분 및 국가별 .....	32
〈표 2-15〉 일반고용허가제 도입 건수 현황: 인적 특성별 .....	34
〈표 2-16〉 특례고용허가제 현황 .....	34
〈표 2-17〉 사업장 유형별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수: 2020년 12월 기준 ·	36
〈표 2-18〉 사업체 특성별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현황: 2020년 12월 기준 ·	36
〈표 2-19〉 표적 집단 면접조사 참여자 현황 .....	38
〈표 3-1〉 이민자의 주요 고용지표 .....	49
〈표 3-2〉 체류자격별 이민 배경 취업자 현황 .....	51
〈표 3-3〉 인적 특성별 이민 배경 취업자 현황 .....	52
〈표 3-4〉 비취업자격 이민자의 취업 결정요인: 2020년 .....	55

<표 3-5> 산업별 이민 배경 취업자 현황 .....	61
<표 3-6> 산업별 이민 배경 취업자 현황: 출신국적 및 체류자격별, 2020년 ..	63
<표 3-7> 산업별 이민 배경 취업자 현황: 인적 특성별, 2020년 .....	65
<표 3-8> 직업별 이민 배경 취업자 현황 .....	67
<표 3-9> 직업별 이민 배경 취업자 현황: 출신국적 및 체류자격별, 2020년 ..	68
<표 3-10> 직업별 이민 배경 취업자 현황: 인적 특성별, 2020년 .....	69
<표 3-11> 산업 및 직업별 이민 배경 취업자의 종사상지위: 2020년 .....	71
<표 3-12> 산업 및 직업별 이민 배경 취업자의 종사 사업체 규모: 2020년 ..	72
<표 3-13> 산업별 이민 배경 취업자의 근무지역: 2020년 .....	73
<표 4-1> 이민 배경 근로자의 최근 1년 이내 직장 변경 경험과 사유 .....	77
<표 4-2>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신청 현황: 2020년 ..	78
<표 4-3> 특성별 이민 배경 근로자의 최근 1년 이내 직장 변경 경험: 2020년 ..	80
<표 4-4> 최근 1년간 이직 경험이 있는 이민 배경 근로자의 종사 산업 이동: 2020년 .....	81
<표 4-5> 최근 1년간 이직 경험이 있는 이민 배경 근로자의 동일 업종 이직 여부: 2020년 .....	83
<표 4-6> 이민 배경 근로자의 동일 직업 근무 기간: 2020년 .....	85
<표 4-7> 이민 배경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 수준 .....	87
<표 4-8> 특성별 이민 배경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 수준: 2020년 .....	89
<표 4-9> 산업 및 직업별 이민 배경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 수준: 2020년 ..	91
<표 4-10> 비취업자격 이민자의 월평균임금 결정요인: 2020년 .....	95
<부표 1> 비취업자격 이민자의 월평균임금 결정요인: 1단계(임금근로여부), 2020년 .....	106

## [ 그림 차례 ]

[그림 2-1] 월별 외국인 입국자 추이 .....	5
[그림 2-2] 외국인의 국제이동 추이: 2000-2020년 .....	6
[그림 2-3] 외국인 국제이동자의 전년 대비 증감 추이 .....	7
[그림 2-4] 일반고용허가제와 특례고용허가제 외국인의 취업 절차 .....	28
[그림 2-5]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의 고용·취업 절차 .....	29
[그림 2-6] 특례고용허가제 외국인의 고용·취업 절차 .....	29
[그림 2-7] 고용허가제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소재지 비중: 2020년 12월 기준 ·	37
[그림 3-1] 외국인 구인인원과 채용인원, 미충원율 추이 .....	59

## 요약

---

본 연구는 정부의 외국인력 정책의 수립과 보완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 근로자나 영주자, 결혼이민자 등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이민자의 인적 특성과 경제활동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통계청의 「국제인구이동통계」를 활용하여 국내 체류 기간이 91일 이상인 외국인 입국자 추이를 살펴보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과 통계청·법무부의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를 통해 국내에 91일 이상 거주 중인 이민자의 규모와 인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와 더불어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EIS)의 외국인통계를 활용하여 비전문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제도인 고용허가제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업체 관계자와 외국인력 사업담당자,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표적 집단 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외국인력 정책의 한계점과 개선 방향을 검토하였다.

통계청(KOISIS)의 「국제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체류 기간 90일을 초과한 외국인 입국자의 대다수는 중국(한국계 포함)이나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국가 출신이며, 외국인 입국자의 22.4%는 전문인력(E-1-E-7),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단기취업(C-4) 등 취업 관련 비자를 부여받은 외국인이다.

행정안전부(KOISIS)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국내에 91일 이상 거주 중인 상주이민자는 2020년 11월 기준 214만 7천 명으로 한국 총인구의 4.1%를 차지한다. 이 같은 상주이민자의 79%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이며,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와 미성년 외국인주민 자녀가

## ii 요약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9.3%와 11.7%이다. 그와 함께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국내에 91일 이상 거주 중인 외국인의 26.9%는 노동시장에서 취업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근로자이며, 외국인 근로자가 상주외국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외국인력 정책은 크게 전문 외국인력 정책과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으로 구분된다. 전문 외국인력 정책은 해외 우수 인재의 유치와 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은 비숙련 외국인의 정주화 방지와 내국인 보호 등을 원칙으로 하는 고용허가제로 대표된다. 전문 외국인력 정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국내로 유입되는 전문 외국인력의 규모는 일정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며, 고용허가제와 관련해서는 업종별 쿼터 배정 문제나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규모,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과 이탈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의 표적 집단 면접조사 결과는 인재의 유치와 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정부의 외국인력 정책이 인력 양성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부분의 검토와 지자체별 외국인력의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과 이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3장에서는 통계청·법무부의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를 활용하여 국내에 91일 이상 거주 중인 15세 이상 상주이민자의 주요 고용지표와 국내 노동시장에서 취업 활동 중인 상주이민자의 산업과 직업 분포를 살펴보았다. 또한 실제 국내 노동시장에서 취업 활동 중인 이민자가 취업 관련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에 한정되지 않고, 취업 관련 이외의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과 귀화자를 모두 포함한다는 점에서 취업 관련 이외의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과 귀화자를 포함하는 비취업자격 이민자의 취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통계청·법무부(KOSIS)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국내에 91일 이상 거주 중인 15세 이상 상주이민자는 138만 명이며,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68.7%와 63.5%이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15세 이상 상주외국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그들의 체류자격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취업자격 외국인(체류자격이 전문인력, 비전문취업, 방문취업인 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0% 이상으로 높고, 취업 관련 이외의 자격을 소지한 비취업자격 외국인의 경

제활동참가율은 26.6~75.5% 수준이다. 국내 노동시장에서 취업 활동 중인 이민자의 상당수는 광·제조업이나 도소매·음식·숙박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직업 면에서는 기능·기계·조작·조립 종사자와 서비스·판매 종사자, 단순노무직 종사자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통계청·법무부(MDIS)의 「2020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를 사용하여 분석한 비취업자격 이민자의 취업 결정요인 분석 결과, 비취업자격 이민자의 한국어능력과 사회 네트워크의 존재는 이들의 취업확률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취업자격 이민자의 성별에 따라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취업자격 이민자의 성별에 따라 이들의 출신 국가, 인적자본 수준 등에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엄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성별 비취업자격 이민자의 특성이나 취업 결정요인의 차이에 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4장에서는 통계청·법무부의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를 활용하여 국내 노동시장에서 취업 활동 중인 15세 이상 이민자의 이직 경험과 월평균임금 수준을 살펴보고, 비취업자격 이민자의 월평균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통계청·법무부(KOSIS)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이민 배경 근로자의 14.2%가 지난 1년 사이 직장을 변경한 경험이 있었으며, 이들의 절반 정도가 기존에 종사 중이었던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직장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 배경 근로자의 대다수는 임금근로자로, 2020년 5월 기준 이민 배경 임금근로자의 절반 정도가 지난 3개월 동안의 월평균임금이 200만~3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임금이 200만 원 미만인 자의 비중도 33.2%에 달한다.

통계청·법무부(MDIS)의 「2020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를 사용하여 분석한 비취업자격 이민자의 월평균임금 수준 결정요인 분석 결과, 비취업자격 이민자의 인적자본(교육수준, 한국어능력)이 우수할수록 높은 수준의 월평균임금을 얻을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비취업자격 이민자의 직무역량의 대리 지표인 동일 직업 근무기간 또한 동일 직업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 비해 1~3년 미만이나 3년 이상인 자가 높은 수준의 월평균임금을 받을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비취업자격 이민자가 국내 노동시장에서 취업 활동을 통해 축적한 직무역량이 이들의 노동시장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일정 부분 작

용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본 연구의 5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실제 국내 노동시장에서 취업 활동 중인 이민자의 상당수가 취업 관련 이외의 자격을 소지한 비취업자격 외국인이나 귀화자라는 점에서 정부의 외국인력 정책이 정책 대상으로 취업 관련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을 비롯하여 비취업자격 외국인과 귀화자에게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노동시장 인력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해 정부의 외국인력 정책이 외국인력의 유치와 활용에 그치지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숙련 외국인력의 양성에도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셋째, 영주자나 결혼이민자, 귀화자 등 정주형 이민자의 원만한 한국 사회 적응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주형 이민자의 역량 개발에 도움이 되는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들이 보유한 인적자본이 국내 노동시장에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지자체별 인구구조나 산업구조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뤄지는 광범위한 논의를 토대로 지자체별 외국인력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여 현행 외국인력 정책이 현장의 수요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근로환경이 열악한 사업체의 환경 개선이나 외국인 근로자의 빈번한 사업장 변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체의 경영주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등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 제1장

---

#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대상

국가 간 인구이동은 송출국과 유입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국가 간 인구이동은 크게 시민권 취득 등을 통한 거주 목적의 유형과 노동계약으로 발생하는 ‘노동이동(labor migration)’, 국가의 정치적 상황으로 발생하는 ‘난민 이동(refugee migration)’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권태환·김두섭, 1990: 226~227).

국내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은 생산인구감소로부터 발생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주목받아 왔다.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유학생, 재외동포 등 이주 배경 인구(이하 이민자)의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학계에서도 이민자의 생활실태나 경제활동,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이민자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생산인구 감소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사회·경제에서 이민자의 역할은 현 수준보다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존

재한다. 현재 정부의 외국인력 정책은 주로 취업 관련 비자(E-1-E-7, E-9, E-10, H-2)를 소지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기준으로 크게 전문인력과 비전문인력으로 양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국내 노동시장에서 취업 활동 중인 상당수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이 취업 관련 비자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외국인력 정책의 대상과 범주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통계청·법무부의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와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EIS)의 외국인통계 자료의 검토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 관계자와 외국인력 관련 사업 담당자, 외국인력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표적 집단 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결과를 활용하여 국내에 거주 중인 이민자의 경제활동 실태와 고용구조를 파악한다. 이를 통해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정책의 수립과 보완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력’과 ‘외국인 근로자’, ‘이민 배경 취업자’, ‘이민 배경 임금근로자’ 등 이민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표현을 사용한다. 특히 국내에 거주 중인 이민자의 경제활동 실태와 산업 및 직업별 고용구조, 임금 분포 등에 관한 분석에서는 ‘외국인력’이라는 표현 대신에 ‘이민 배경 취업자’나 ‘이민 배경 임금근로자’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는 국내 노동시장에서 취업 활동 중인 이민자가 ‘외국인력’ 또는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유학생, 결혼이민자, 영주자 등 취업 관련 이외의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이민 배경 취업자’와 ‘이민 배경 임금근로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를 모두 포함하며, 국내에 91일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상주인구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국제인구이동통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청·법무부의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와 같은 다양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외국인의 국내 유입 추이와 국내에 거주 중인 이민자의 인적 특성, 경제활동 실태, 산업 및 직업별 고용구조 등을 분석하였다. 각 장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에 적합한 통계자료를 활용하긴 하였으나, 통계자료를 생산하는 개별 부처에서 정의하는 이민자의 개념 차이 때문에 각각의 장에서 포함하는 이민자 범위에 차이가 있을 개연성이 존재한다.

## 제2절 연구의 구성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외국인 인구의 국내 입국 추이와 국내에 거주 중인 이민자의 규모, 인적 특성을 살펴본다. 그와 동시에 정부의 외국인력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 관계자와 외국인력 사업담당자, 외국인력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표적 집단 면접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기존 외국인력 정책의 한계점과 발전 방향을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이민자의 경제활동 현황을 살펴보고 비취업자격 외국인(취업 관련 체류자격 이외의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과 귀화자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국내 노동시장에서 취업 활동 중인 이민자의 이직 경험과 월평균임금 수준을 살펴보고 비취업자격 외국인과 귀화자의 월평균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서 진행한 연구 내용을 요약하고 본 연구의 결과에서 정부의 외국인력 정책 방향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 제2장

## 이민자 규모와 외국인력 정책

## 제1절 외국인의 국제이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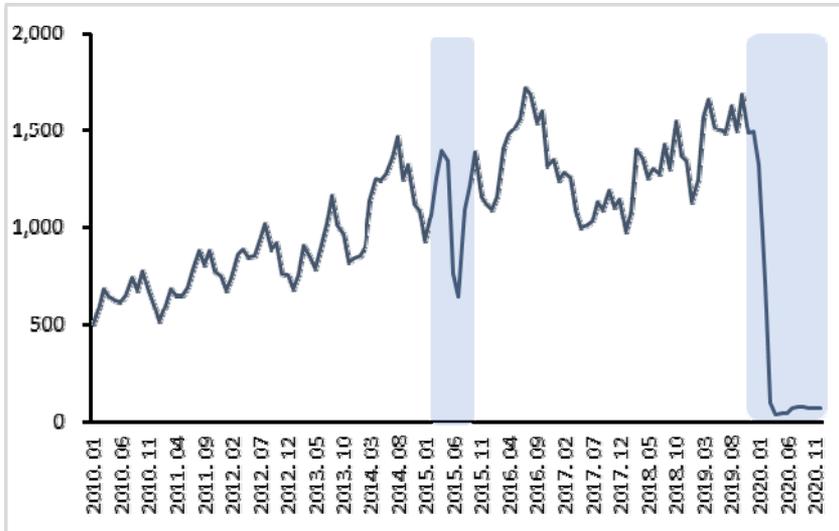
법무부의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 통계」와 통계청의 「국제인구이동통계」는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이다. 이 절에서는 통계청의 「국제인구이동통계」를 활용하여 외국인의 국내 유입 추이를 살펴본다. 통계청의 「국제인구이동통계」는 외국인의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의 출입국 건수를 집계하는 법무부의 출입국자료를 기초로 작성되며 국내 체류 기간 90일을 초과한 외국인을 포함한다(통계청 보도자료, 2021.07.15.).

국내 체류 기간 90일을 초과한 외국인 입국자의 추이를 살펴보기에 앞서 법무부의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 통계」를 활용하여 월별 외국인 입국자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12월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 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2020년 1월 이후 외국인 입국자 규모가 이전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그림 2-1 참조). 이러한 감염병의 확산에 따른 외국인 입국자 감소 현상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국내에 확산되었던 2015년 5

월에도 관찰된 바 있다. 과거 메르스의 확산이 진정됨에 따라 외국인 입국자의 규모가 메르스 확산 이전 수준으로 점차 회복되는 추세를 보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확산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한 외국인 입국자 규모는 향후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된다면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1] 월별 외국인 입국자 추이

(단위: 천 명)



주: 모든 체류자격의 외국인 입국자 포함

자료: KOSIS(법무부),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 통계」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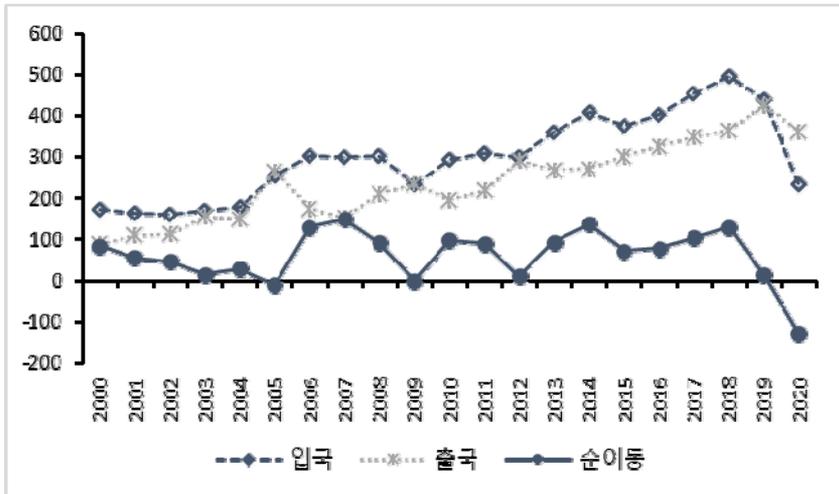
통계청(KOSIS, 2021)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체류 기간 90일을 초과한 외국인 입국자는 23만 3천 명으로 2019년 대비 20만 5천 명 감소하였다. 특히 2010년 이후 지속되어 오던 외국인 인구의 순유입(입국자-출국자)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많은 국가의 국경폐쇄에도 불구하고 출국자(36만 2천 명)가 입국자(23만 3천 명)를 상회하여 순유출(12만 8천 명)로 전환되었다(그림 2-2 참조).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외국인 입국자와 출국자 규모의 변화는 [그림 2-3]에서 더욱 뚜렷하게 관찰된다. 전년 대비 외국인 입국자와 출국자 규모는 2020년 1월을 기점으로 대폭 하락하였으며, 코로나19의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전년 대비 외국인 입국자와 출국자의 감소 현상은 2021년 2월까지 지속되었다. 외국인 입국자와 출국자 모두 2021년 5월에 전년 대비 각각 5천 명과 1만 5천 명이 증가하긴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5월과 비교할 때 외국인 입국자는 1만 6천 명, 외국인 출국자는 1만 2천 명 적은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외국인 인구의 국가 간 이동이 코로나19 여파로 상당 부분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2] 외국인의 국제이동 추이: 2000~2020년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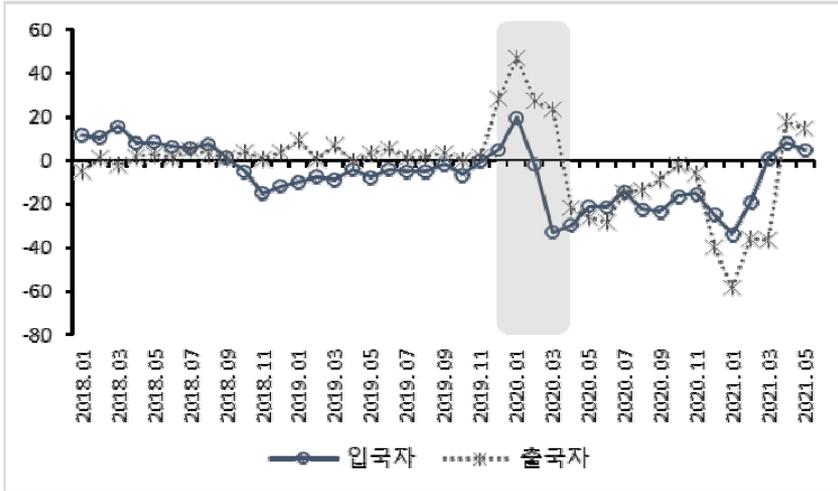
주: 1) 상주 국가를 떠나 90일을 초과한 외국인 국제이동자(입국자와 출국자)를 포함하며, 체류 기간 90일 이하의 단기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체류하거나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도 포함

2) 순이동 = 입국자 - 출국자

자료: KOSIS(통계청), 「국제인구이동통계」 (각 연도)

[그림 2-3] 외국인 국제이동자의 전년 대비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주: 상주 국가를 떠나 90일을 초과한 외국인 국제이동자(입국자와 출국자)를 포함하며, 체류 기간 90일 이하의 단기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체류하거나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도 포함

자료: KOSIS(통계청), 「국제인구이동통계」(각 연도)

국내 체류 기간 90일을 초과한 외국인 입국자의 성별과 국적 구성은 <표 2-1>과 같다. 2020년 한 해 동안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23만 3천 명 중 49.1%는 남성이며, 2010년이나 2019년과 비교할 때 외국인 입국자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감소하였다. 2020년 기준 남성 외국인 입국자는 11만 4천 명으로 전년보다 11만 6천 명 감소하였으며, 여성 외국인 입국자는 전년 대비 8만 9천 명 감소한 11만 9천 명이다.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인구의 대다수는 아시아 국가 출신이며, 특히 중국 국적 외국인이 2020년 기준 전체 외국인 입국자의 41.3%를 차지한다. 2019년과 2020년 외국인 입국자의 국적 비중을 비교해 보면, 태국 국적의 외국인 입국자가 전체 외국인 입국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12.2%에서 2020년 3.7%까지 감소하였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 입국자가 전체 외국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0.8%로 2019년의 5.8%보다 5%p 증가하였다(<표 2-1> 참조).

<표 2-1> 성별 및 국적별 외국인 입국자<sup>1)</sup> 현황

(단위: 천 명, %)

구분	2010년	2019년	2020년
전체	293 (100.0)	438 (100.0)	233 (100.0)
성별			
남성	156 (53.3)	230 (52.5)	114 (49.1)
여성	137 (46.7)	208 (47.5)	119 (50.9)
국적별			
중국	155 (53.0)	139 (31.6)	96 (41.3)
일본	5 (1.6)	5 (1.2)	5 (1.9)
베트남	23 (7.8)	61 (14.0)	28 (12.0)
필리핀	9 (3.1)	9 (2.1)	3 (1.3)
태국	7 (2.3)	53 (12.2)	9 (3.7)
몽골	5 (1.9)	9 (2.0)	7 (3.1)
인도네시아	5 (1.8)	10 (2.2)	3 (1.5)
우즈베키스탄	9 (2.9)	26 (5.9)	8 (3.4)
캄보디아	4 (1.3)	10 (2.3)	3 (1.5)
미국	28 (9.7)	21 (4.8)	21 (9.1)
캐나다	7 (2.2)	4 (1.0)	4 (1.7)
러시아(연방)	3 (0.9)	18 (4.1)	7 (2.9)
기타 <sup>2)</sup>	34 (19.5)	73 (42.2)	39 (22.4)

주: 1) 상주 국가를 떠나 90일을 초과한 외국인 입국자를 포함하며, 체류 기간이 90일 이하인 단기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체류하거나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도 포함

2)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태국, 몽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미국, 캐나다, 러시아(연방)를 제외한 모든 국적 포함

3) ( )는 비중

자료: KOSIS(통계청), 「국제인구이동통계」(각 연도)

국내 체류 기간 90일을 초과한 외국인 입국자의 체류자격 구성을 <표 2-2>에서 살펴보면, 전문인력(E-1~E-7),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단기 취업(C-4) 등을 포함하는 취업 관련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 입국자가 전체 외국인 입국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 22.4%로 2019년의 26%보다 소폭 감소하였다.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단기방문(C-3)을 포함하는 단기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 입국자가 전체 외국인 입국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34.5%에서 2020년 24.9%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취해진 국가 간 인구이동 제한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유학·일반연수, 재외동포, 영주·결혼이민 등의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 입국자가 전체 외국인 입국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37.8%에서 2020년 50.6%로 증가하였다.

이어서 <표 2-2>를 통해 외국인 입국자의 체류자격 구성을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과 2010년을 비교해 보면, 비취업자격 외국인 입국자가 전체 외국인 입국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55.1%에서 2019년에 74%로 확대되었다. 이는 매년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입국자의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취업 관련 자격이 부여된 외국인 입국자의 상대수를 차지하는 비전문인력 외국인 입국자 규모가 크게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비전문인력 외국인 입국자의 규모 변화가 크지 않은 원인은 정부의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이 단기 순환 원칙에 기반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매년 국내로 유입되는 취업 관련 체류자격 외국인의 국적 분포를 <표 2-3>에서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취업 관련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 입국자의 50.9%는 중국 국적자이다. 취업 관련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 입국자의 국적 구성은 시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2010년 한 해 동안 취업 관련 비자를 부여받은 외국인 입국자에서 미국과 캐나다 국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7.7%였으나 2018년과 2019년에는 5% 미만에 그쳤다. 중국 국적자의 비중 또한 2010년 55.4%에서 2018년과 2019년 각각 37.6%와 31.5%로 대폭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외국인 입국자 중 방문취업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의 규모가 2010년 7만 1천 명에서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5만 3천 명, 4만 5천 명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통계청, 각 연도).

〈표 2-2〉 외국인 입국자<sup>1)</sup>의 체류자격 구성

(단위: 천 명, %)

구분	2010년	2019년	2020년
전체	293 (100.0)	438 (100.0)	233 (100.0)
취업자격	132 (44.9)	114 (26.0)	52 (22.4)
전문인력 <sup>2)</sup>	20 (6.7)	11 (2.4)	8 (3.6)
비전문인력 <sup>3)</sup>	106 (36.1)	98 (22.4)	38 (16.4)
단기취업 등 <sup>4)</sup>	6 (2.0)	5 (1.1)	6 (2.4)
비취업자격	161 (55.1)	324 (74.0)	181 (77.6)
유학·일반연수	29 (9.8)	65 (14.9)	45 (19.2)
영주·결혼이민 등 <sup>5)</sup>	34 (11.8)	48 (10.9)	42 (18.0)
재외동포	16 (5.3)	53 (12.0)	31 (13.4)
단기 <sup>6)</sup>	77 (26.4)	151 (34.5)	58 (24.9)
기타 <sup>7)</sup>	6 (1.9)	7 (1.7)	5 (2.2)

주: 1) 상주 국가를 떠나 90일을 초과한 외국인 입국자를 포함하며, 체류 기간이 90일 이하인 단기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체류하거나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도 포함

2) 전문인력은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에 해당하는 체류자격 소지자 포함

3) 비전문인력은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포함

4) 단기취업 등은 단기취업(C-4), 기술연수(D-3), 기업투자(D-8), 선원취업(E-10) 포함

5) 영주·결혼이민 등은 영주(F-5), 결혼이민(F-6),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포함

6) 단기는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단기방문(C-3) 포함

7) 기타는 취업자격과 유학·일반연수, 영주·결혼이민 등, 재외동포, 단기에 포함되는 체류자격을 제외한 체류자격과 미상 포함

8) ( )는 비중

자료: KOSIS(통계청), 「국제인구이동통계」(각 연도)

〈표 2-3〉 취업 관련 체류자격<sup>1)</sup> 외국인 입국자<sup>2)</sup>의 국적 구성

(단위: %)

구분	2010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체	100.0	100.0	100.0	100.0
중국	55.4	37.6	31.5	50.9
일본	0.4	0.3	0.2	1.3
베트남	6.9	4.8	7.2	3.3
필리핀	3.4	4.3	4.5	1.3
태국	1.8	5.0	4.7	1.7
몽골	1.5	0.7	0.8	0.3
인도네시아	3.4	7.1	6.8	4.0
우즈베키스탄	5.6	7.2	10.6	6.4
캄보디아	1.6	5.4	6.9	4.6
미국	5.9	2.6	2.7	4.9
캐나다	1.8	0.5	0.5	0.8
러시아(연방)	0.7	0.1	0.1	0.4
기타 <sup>3)</sup>	11.7	24.4	23.5	20.0

주: 1) 전문인력(E-1-E-7),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단기취업 등(C-4, D-3, D-8, E-10) 포함

2) 상주 국가를 떠나 90일을 초과한 외국인 입국자를 포함하며, 체류 기간이 90일 이하인 단기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체류하거나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도 포함

3)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태국, 몽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미국, 캐나다, 러시아(연방)를 제외한 모든 국적 포함

자료: KOSIS(통계청), 「국제인구이동통계」 (각 연도)

## 제2절 상주이민자의 규모와 인적 특성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은 국내에 91일 이상 거주 중인 외국인과 귀화자, 미성년 외국인주민 자녀의 규모와 인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표 2-4>에서 확인할 수 있듯 2020년 기준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주민(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 미성년 외국인주민 자녀를 포함)은 214만 7천 명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등의 감소로 2019년보다 규모가 7만 명 감소하였다.

2020년 기준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주민의 유형 구성을 <표 2-4>에서 살펴보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이 전체 외국인주민의 79%를 차지하며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와 외국인주민 자녀(귀화자의 미성년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미성년자녀로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를 포함)는 각각 전체 외국인주민의 9.3%와 11.7%를 차지한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의 세부 유형을 살펴보면, 이들의 26.9%는 국내 노동시장에서 취업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근로자이며 외국국적동포가 전체 외국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4%에 달한다.

이어서 세부 유형별 외국인이 전체 외국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표 2-4>를 통해 2015년과 2020년을 비교해 보면, 국내 노동시장에서 취업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42%에서 2020년 26.9%로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학생이나 외국국적동포, 기타 유형의 외국인이 외국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보다 2020년에 다소 증가하였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나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과 단기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거주 중인 불법체류자를 포함하는 기타 유형의 외국인이 외국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5.4%에서 2020년 34.1%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2-4〉 연도별 외국인주민 규모: 2015-2020년

(단위: 천 명,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체		1,711 (100.0)	1,765 (100.0)	1,861 (100.0)	2,055 (100.0)	2,217 (100.0)	2,147 (100.0)
외 국 인	소계	1,364 (79.7)	1,414 (80.1)	1,479 (79.5)	1,652 (80.4)	1,779 (80.3)	1,696 (79.0)
	외국인 근로자 <sup>1)</sup>	573 (42.0)	542 (38.3)	496 (33.5)	528 (32.0)	515 (29.0)	455 (26.9)
	결혼이민자 <sup>2)</sup>	145 (10.6)	160 (11.3)	161 (10.9)	167 (10.1)	174 (9.8)	174 (10.2)
	유학생 <sup>3)</sup>	82 (6.0)	96 (6.8)	117 (7.9)	143 (8.6)	161 (9.0)	143 (8.4)
	외국국적동포 <sup>4)</sup>	216 (15.9)	236 (16.7)	277 (18.7)	296 (17.9)	303 (17.0)	345 (20.4)
	기타 <sup>5)</sup>	347 (25.4)	381 (26.9)	429 (29.0)	518 (31.4)	626 (35.2)	579 (34.1)
귀화자 <sup>6)</sup>		150 (8.8)	159 (9.0)	170 (9.1)	177 (8.6)	186 (8.4)	199 (9.3)
외국인주민 자녀 <sup>7)</sup>		198 (11.5)	191 (10.8)	212 (11.4)	226 (11.0)	252 (11.4)	252 (11.7)

- 주: 1) 체류자격이 취업 분야(E-1-E-7, E-9, E-10)인 자와 방문취업(H-2)인 자 포함  
 2)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3) 체류자격이 유학(D-2)과 한국어연수(D-4-1), 외국어연수(D-4-7)인 자 포함  
 4) 재외동포(F-4) 중 국내 거소 신고자 포함  
 5) 체류자격이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및 단기체류기간 초과 불법 체류자 포함  
 6)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이며, 한국인이 국적을 회복한 경우와 북한이탈주민은 포함하지 않음  
 7) 귀화자의 미성년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미성년자녀로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포함  
 8) ( )는 비중으로 외국인 소계와 귀화자, 외국인주민 자녀의 비중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며,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기타의 비중은 외국인 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KOSIS(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각 연도)

앞서 살펴보았듯이, 매년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인구의 상당수는 중국 국적자이다. 본 장의 1절에서 사용한 통계청의 「국제인구이동통계」는 중국 국적을 한국계 중국과 중국(한국계 외)으로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으므로 해당 통계를 통해 한국계 중국 출신 외국인 입국자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은 중국 국적을 한국계 중국과 중국(한국계 외)으로 구분하여 제공하므로 국적별 이민자 규모를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표 2-5〉에서 국내에 거주 중인 이민자(외국인과 귀화자를 포함)의 국적 분포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전체 이민자에서 중국(한국계 포함) 국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46.3%에 달한다. 또한 2020년 기준 국내에 거주 중인 이민자의 90% 이상이 아시아 국가 출신이며, 북미나 유럽·오세아니아 국가 등 아시아 외 국가 출신이 국내에 거주 중인 이민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에 그쳤다.

이민자의 한국 국적 취득 여부에 따라 아시아 국적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차이가 있다. 2020년 기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아시아 이외 국가 출신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6%로 10명 중 1명 수준이나,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에서 아시아 이외 국가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1.6%에 불과하다. 국내에 거주 중인 귀화자의 출신국적은 중국과 베트남에 집중되어 있으며, 2020년 기준 귀화자의 64.5%는 중국(한국계 포함) 출신이며 베트남 출신도 21.4%에 달한다(행정안전부, 2021).

〈표 2-5〉 국내 거주 이민자<sup>1)</sup>의 국적 구성

(단위: 천 명,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체	1,573 (100.0)	1,649 (100.0)	1,828 (100.0)	1,965 (100.0)	1,895 (100.0)
중국(한국계 외) <sup>2)</sup>	235 (14.9)	247 (15.0)	251 (13.8)	256 (13.0)	245 (12.9)
중국(한국계)	565 (35.9)	578 (35.0)	615 (33.6)	623 (31.7)	633 (33.4)
일본	19 (1.2)	19 (1.2)	20 (1.1)	21 (1.1)	21 (1.1)
베트남	159 (10.1)	178 (10.8)	201 (11.0)	236 (12.0)	243 (12.8)
필리핀	60 (3.8)	56 (3.4)	56 (3.1)	59 (3.0)	53 (2.8)
태국	83 (5.3)	94 (5.7)	152 (8.3)	183 (9.3)	166 (8.8)
우즈베키스탄	46 (2.9)	52 (3.1)	59 (3.2)	63 (3.2)	59 (3.1)
기타 아시아 <sup>2)</sup>	275 (17.5)	291 (17.7)	309 (16.9)	334 (17.0)	308 (16.3)
러시아	20 (1.3)	31 (1.9)	39 (2.1)	45 (2.3)	43 (2.3)
미국·캐나다	67 (4.2)	60 (3.6)	81 (4.4)	94 (4.8)	75 (4.0)
유럽·오세아니아	23 (1.5)	23 (1.4)	25 (1.4)	28 (1.4)	28 (1.5)
기타 <sup>3)</sup>	21 (1.4)	20 (1.2)	21 (1.2)	23 (1.2)	21 (1.1)

주: 1) 90일 미만 단기체류자는 포함하지 않으며,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를 모두 포함

2) 중국은 대만을 포함하지 않으며, 기타 아시아는 중국(한국계 포함), 일본, 베트남, 필리핀, 태국,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한 그 외 아시아 국가 포함

3) 기타는 아시아 국가와 러시아, 미국·캐나다, 유럽·오세아니아 국가를 제외한 그 외 모든 국가 포함

4) ( )는 비중

자료: KOSIS(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각 연도)

<표 2-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내에 거주 중인 이민자의 연령 분포는 그들의 체류자격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2020년 기준 국내 노동시장에서 취업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근로자 중 20~30대 비중이 65.1%로 높고, 학업을 목적으로 국내에 상주하고 있는 유학생의 대다수는 10~20대이다. 결혼 이민자와 귀화자의 경우 2020년 기준 전체에서 30~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60.8%와 56.3%를 차지하며, 외국국적동포는 60세 이상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로 다른 체류자격 유형에 비해 크게 높다.

이어서 국내에 거주 중인 이민자의 연령대 분포를 2016년과 2020년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에 한시적으로 체류할 가능성이 큰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과 비교할 때 정주형 이민자의 성격의 결혼이민자와 외국국적동포, 귀화자의 경우 연령대 분포에 약간의 변화가 관찰되었다. 결혼이민자와 외국국적동포, 귀화자의 경우 2016년 대비 2020년에 전체 인구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비중이 2016년 31.9%에서 2020년 35%로 소폭 확대되었다(<표 2-6> 참조).

<표 2-7>에서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의 국내 체류 기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외국인의 국내 체류 기간별 비중은 그들의 체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이는 외국인이 국내 입국 당시 부여된 비자(체류자격을 변경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 이후의 비자)에 따라 국내 체류 기간의 상한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다수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체류 기간이 5년 미만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취업 관련 비자의 체류 기간 상한이 대체로 5년 미만이기 때문이다.<sup>1)</sup> 이와는 대조적으로 결혼이민자나 외국국적동포는 다른 유형의 외국인보다 국내 체류 기간이 5~10년 미만과 10년 이상인 비중이 높으며, 특히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국내 체류 기간이 10년 이상인 비중도 36.7%에 달한다.

1)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 상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2-6〉 국내 거주 이민자의 연령대 구성

(단위: %)

2016년							
연령대	전체	외국인 근로자 <sup>1)</sup>	결혼 이민자 <sup>2)</sup>	유학생 <sup>3)</sup>	외국국적 동포 <sup>4)</sup>	기타 <sup>5)</sup>	귀화자 <sup>6)</sup>
20세 미만	5.7	0.1	0.4	14.3	1.1	16.7	5.0
20대	27.7	31.9	27.1	77.4	15.9	16.8	15.3
30대	25.8	33.1	33.2	7.5	17.5	21.9	30.4
40대	17.3	17.4	21.4	0.7	15.9	20.3	24.7
50대	15.1	15.3	14.2	0.1	17.7	17.2	16.2
60세 이상	8.5	2.2	3.7	0.0	31.9	7.2	8.4
2020년							
연령대	전체	외국인 근로자 <sup>1)</sup>	결혼 이민자 <sup>2)</sup>	유학생 <sup>3)</sup>	외국국적 동포 <sup>4)</sup>	기타 <sup>5)</sup>	귀화자 <sup>6)</sup>
20세 미만	6.2	0.1	0.4	9.7	0.8	15.2	6.2
20대	24.4	29.1	19.1	81.3	8.5	17.9	8.6
30대	28.3	36.0	39.0	8.2	20.8	28.5	32.3
40대	16.4	16.1	21.8	0.8	16.2	19.1	24.0
50대	14.5	16.7	14.5	0.1	18.7	13.7	17.1
60세 이상	10.1	2.0	5.3	0.01	35.0	5.6	11.8

주: 1) 체류자격이 취업 분야(E-1-E-7, E-9, E-10)인 자와 방문취업(H-2)인 자 포함

2)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자 포함

3) 체류자격이 유학(D-2)과 한국어연수(D-4-1), 외국어연수(D-4-7)인 자 포함

4) 재외동포(F-4) 중 국내 거소 신고자 포함

5) 체류자격이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및 단기체류기간 초과 불법체류자 포함

6)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이며, 한국인이 국적을 회복한 경우와 북한이탈주민은 포함하지 않음

자료: KOSIS(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각 연도)

<표 2-7>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 2020년

(단위: 천 명, %)

구분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계
전체	161 (9.5)	611 (36.1)	370 (21.9)	348 (20.6)	203 (12.0)	1,692 (100.0)
외국인 근로자 <sup>1)</sup>	39 (8.7)	220 (48.4)	129 (28.2)	46 (10.2)	21 (4.5)	455 (100.0)
결혼이민자 <sup>2)</sup>	10 (5.5)	26 (14.9)	23 (13.1)	52 (29.8)	64 (36.7)	174 (100.0)
유학생 <sup>3)</sup>	33 (23.3)	67 (47.1)	31 (22.1)	9 (6.6)	1 (0.8)	143 (100.0)
외국국적동포 <sup>4)</sup>	10 (2.9)	57 (16.6)	75 (21.8)	151 (43.6)	52 (15.1)	345 (100.0)
기타 <sup>5)</sup>	69 (12.0)	240 (41.7)	112 (19.4)	90 (15.6)	65 (11.3)	575 (100.0)

- 주: 1) 체류자격이 취업 분야(E-1-E-7, E-9, E-10)인 자와 방문취업(H-2)인 자 포함
- 2)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자 포함
- 3) 체류자격이 유학(D-2)과 한국어연수(D-4-1), 외국어연수(D-4-7)인 자 포함
- 4) 재외동포(F-4) 중 국내 거소 신고자 포함
- 5) 체류자격이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및 단기체류기간 초과 불법체류자 포함
- 6) ( )는 비중

자료: KOSIS(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2020)

이어서 국내에 91일 이상 계속 거주한 15세 이상 상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계청·법무부의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를 활용하여 15세 이상 상주이민자의 교육수준이나 한국어능력 같은 인적자본 수준을 살펴본다. <표 2-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20년 5월 기준 15세 이상 상주이민자의 42.5%가 고졸에 해당하는 교육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졸 이상 고학력자 비중도 29.3%에 달한다.

특성별 상주이민자의 교육수준은 <표 2-8>과 같다. 남성 상주이민자가 여성 상주이민자보다 고졸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비중이 다소 높고, 연령대별 상주이민자의 교육수준과 관련해서는 15~29세 상주이민자의 80% 이상이 고졸 이상의 교육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와 40대, 50대, 60세

이상 상주이민자의 교육수준 분포를 살펴보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특히 30대 상주이민자의 경우 교육수준이 대졸 이상인 비중이 42.2%로 다른 연령대의 상주이민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주이민자의 교육수준은 그들의 국내 체류 기간과 관계 없이 모든 체류 기간 유형에서 고졸 비중이 40% 이상으로 가장 높다.

체류자격과 출신국적별 상주이민자의 교육수준 분포를 <표 2-9>에서 살펴보면, 기타를 제외한 모든 체류자격의 상주외국인과 귀화자에서 교육수준이 고졸인 경우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은 다른 체류자격의 상주외국인에 비해 교육수준이 중졸 이하인 비중은 1% 미만에 불과하며 고졸인 비중이 68%로 높는데, 이는 상당수의 유학생이 국내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거나 연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상주이민자의 교육수준은 그들의 출신국적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 오세아니아주 국가가 포함되는 아시아 외 국가 출신 상주이민자는 교육수준이 대졸 이상인 비중이 73.7%로 매우 높다. 반면 한·국제 중국 출신과 베트남 출신의 상주이민자는 중국(한국계 외)이나 기타 아시아 국가 출신 상주이민자와 비교할 때 교육수준이 중졸 미만인 비중이 각각 14.3%와 14.9%로 높다. 특히 한국계 중국 출신 상주이민자의 경우 교육수준이 중졸 이하인 비중이 39.1%에 달해 다른 국적 출신의 상주이민자와 큰 차이를 보인다(<표 2-9> 참조).

<표 2-8> 특성별 이민자의 교육수준: 2020년

(단위: 천 명, %)

구분		중졸 미만	중졸	고졸	대졸 이상 <sup>2)</sup>	계
전체		138 (10.0)	251 (18.2)	587 (42.5)	405 (29.3)	1,380 (100.0)
성별	남성	67 (8.8)	137 (18.0)	337 (44.4)	219 (28.8)	759 (100.0)
	여성	71 (11.4)	114 (18.4)	250 (40.2)	186 (30.0)	621 (100.0)
연령대	15~29세	17 (4.3)	51 (12.9)	208 (52.4)	121 (30.4)	397 (100.0)
	30~39세	22 (5.6)	59 (15.1)	146 (37.1)	166 (42.2)	394 (100.0)
	40~49세	21 (9.6)	47 (21.9)	88 (40.6)	61 (28.0)	217 (100.0)
	50~59세	35 (16.5)	53 (25.2)	88 (41.5)	36 (16.8)	212 (100.0)
	60세 이상	43 (26.7)	40 (24.6)	57 (35.4)	21 (13.3)	161 (100.0)
국내 체류 기간	6개월 미만	2 (11.4)	3 (15.0)	8 (42.5)	6 (31.1)	18 (100.0)
	6개월~1년 미만	6 (7.6)	11 (13.6)	35 (45.3)	26 (33.5)	78 (100.0)
	1~3년 미만	26 (9.0)	41 (14.1)	137 (46.9)	88 (30.0)	292 (100.0)
	3~5년 미만	25 (10.1)	40 (16.3)	100 (40.5)	82 (33.1)	248 (100.0)
	5~10년 미만	40 (9.8)	83 (20.5)	162 (40.2)	119 (29.4)	403 (100.0)
	10년 이상	39 (11.4)	73 (21.4)	145 (42.4)	85 (24.9)	342 (100.0)

주: 1) 국내에 91일 이상 계속 거주한 15세 이상 상주인구를 포함하며, 가중치를 사용하여 계산

2) 대졸 이상은 전문대졸 포함

3) ( )는 비중

자료: MDIS(통계청·법무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2020), (추출다운로드 일자: 2021.09.24)

〈표 2-9〉 체류자격 및 출신국적별 이민자의 교육수준: 2020년

(단위: 천 명, %)

구분		중졸 미만	중졸	고졸	대졸 이상 <sup>2)</sup>	계
전체		138 (10.0)	251 (18.2)	587 (42.5)	405 (29.3)	1,380 (100.0)
체류 자격	외국인 근로자 <sup>3)</sup>	39 (8.6)	98 (21.6)	197 (43.6)	118 (26.2)	452 (100.0)
	유학생	0.1 (0.1)	0.4 (0.3)	93 (68.0)	43 (31.6)	137 (100.0)
	재외동포	40 (11.9)	61 (18.3)	126 (37.6)	108 (32.3)	336 (100.0)
	영주자	10 (8.8)	21 (18.1)	52 (45.7)	31 (27.4)	115 (100.0)
	결혼이민	11 (8.8)	22 (18.1)	49 (40.4)	40 (32.8)	122 (100.0)
	기타 <sup>4)</sup>	33 (19.2)	37 (21.8)	47 (27.9)	53 (31.2)	170 (100.0)
	귀화자 <sup>5)</sup>	5 (11.0)	12 (24.2)	21 (43.7)	10 (21.1)	49 (100.0)
출신 국적	중국(한국계)	72 (14.3)	126 (24.8)	228 (44.9)	81 (16.0)	508 (100.0)
	중국(한국계 외)	6 (4.5)	23 (17.0)	60 (45.4)	44 (33.1)	133 (100.0)
	베트남	28 (14.9)	37 (19.5)	94 (49.6)	31 (16.1)	190 (100.0)
	기타 아시아 <sup>6)</sup>	28 (6.8)	60 (14.4)	178 (42.5)	152 (36.3)	418 (100.0)
	아시아 외 <sup>7)</sup>	3 (2.2)	5 (4.1)	26 (20.1)	97 (73.7)	132 (100.0)

주: 1) 국내에 91일 이상 계속 거주한 15세 이상 상주인구를 포함하며, 가중치를 사용하여 계산

2) 대졸 이상은 전문대졸 포함

3) 외국인 근로자는 비전문취업과 방문취업, 전문인력 포함

4) 기타는 비전문취업, 방문취업, 전문인력, 유학생, 재외동포, 영주자, 결혼이민자를 제외한 모든 체류자격의 상주외국인 포함

5) 귀화자는 조사연도 기준 최근 5년 이내 귀화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하며, 귀화자의 출신국적은 귀화 이전 국적에 해당

6) 중국(한국계 포함), 베트남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 포함

7) 아시아 국가 이외의 모든 국가 포함

8) ( )는 비중

자료: MDIS(통계청·법무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2020), (추출다운로드 일자: 2021.09.24.)

통계청·법무부의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서는 상주이민자의 한국어능력(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해당 한국어능력은 상주이민자가 직접 본인의 한국어능력에 대해 5점 리커트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한 주관적 지표이다. 전체 상주이민자의 한국어능력 4개 영역(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평균은 3.5점으로 ‘보통’ 수준이며, 상주이민자의 43.8%가 자신의 한국어능력을 ‘잘함(5점 리커트척도로 측정된 한국어능력 4개 영역의 합이 16점 이상)’ 이라고 평가하였다(〈표 2-10〉 참조).

개인적 특성별 상주이민자의 한국어능력을 〈표 2-10〉에서 살펴보면, 남성 상주이민자보다 여성 상주이민자가 자신의 한국어능력이 ‘잘함’에 해당한다고 평가한 비중이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상주이민자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한국어능력의 평균이 높았으며, 특히 60세 이상 상주이민자의 경우 자신의 한국어능력을 ‘못함(5점 리커트척도로 측정된 한국어능력 4개 영역의 합이 8점 이하)’ 이라고 평가한 비중이 9.7%에 그쳤다. 이는 다른 체류자격 소지자에 비해 60세 이상 상주이민자의 상당수가 한국어능력이 우수한 외국국적동포인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sup>2)</sup> 상주이민자의 한국어능력은 그들의 국내 체류 기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국내 체류 기간이 긴 집단일수록 한국어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년 이상 국내에 체류 중인 상주이민자는 한국어능력 4개 영역의 평균값이 4.3점으로 매우 높고, 자신의 한국어능력이 ‘잘함’에 해당한다고 평가한 비중이 72.6%에 달한다. 반면 상주이민자의 한국어능력(4개 영역의 평균값)은 그들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어서 상주이민자의 체류자격이나 출신국가에 따른 한국어능력 수준을 〈표 2-11〉을 통해 살펴본다. 체류자격에 따른 상주이민자의 한국어능력과 관련해서는 재외동포와 영주자, 귀화자의 한국어능력이 다른 체류자격을 소지한 상주외국인에 비해 우수하며, 전문인력 비자를 소지한 상주외국인의 한국어능력 4개 영역의 평균값은 2.5점으로 ‘보통’에 미치지 못했다. 출신국적별 상주이민자의 한국어능력을 살펴보면, 한국계 중국 출신 상주이민자의 경우 자신의 한국어능력이 ‘잘함’에 해당한다고 평가한 비중이 76%에 달하나 베트남 출신 상주이민자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13.1%에 그쳤다.

2) 행정안전부(KOSIS, 2021)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에 91일 이상 거주 중인 60세 이상 이민자의 70.2%는 외국국적동포(재외동포 중 국내 거소 신고자)이다.

〈표 2-10〉 인적 특성별 이민자의 한국어능력: 2020년

(단위: 점, %)

구분	평균 <sup>2)</sup>	못함	보통	잘함
전체	3.5	17.9	38.3	43.8
성별				
남성	3.4	20.7	39.4	40.0
여성	3.6	14.4	37.0	48.5
연령대				
15~29세	3.2	19.4	53.9	26.7
30~39세	3.3	19.7	42.5	37.8
40~49세	3.6	21.0	29.3	49.7
50~59세	3.9	14.7	23.2	62.1
60세 이상	4.1	9.7	21.5	68.8
국내체류기간				
6개월 미만	2.6	39.8	46.8	13.4
6개월~1년 미만	2.5	43.9	43.9	12.2
1~3년 미만	2.8	32.6	47.5	19.9
3~5년 미만	3.1	24.4	45.6	30.0
5~10년 미만	3.8	9.3	38.1	52.6
10년 이상	4.3	3.6	23.7	72.6
교육수준				
중졸 미만	3.3	25.2	35.2	39.6
중졸	3.5	17.8	35.8	46.4
고졸	3.6	14.6	41.0	44.4
대졸 이상 <sup>3)</sup>	3.5	20.2	37.1	42.8

주: 1) 국내에 91일 이상 계속 거주한 15세 이상 상주인구를 포함하며, 가중치를 사용하여 계산

2) 5점 척도(1: 매우 못함 ~ 5: 매우 잘함)를 사용하여 측정된 한국어능력 4개 영역(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평균임

3) 대졸 이상은 전문대졸 포함

자료: MDIS(통계청·법무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2020), (추출다운로드 일자: 2021.09.24.)

<표 2-11> 체류자격 및 출신국적별 이민자의 한국어능력: 2020년

(단위: 점, %)

구분	평균 <sup>2)</sup>	못함	보통	잘함
전체	3.5	17.9	38.3	43.8
체류자격				
비전문취업	2.9	24.1	59.7	16.2
방문취업	3.8	13.0	28.6	58.4
전문인력	2.5	45.0	41.8	13.3
유학생	3.2	12.1	65.1	22.8
재외동포	4.2	6.5	20.2	73.2
영주자	4.3	2.2	24.6	73.2
결혼이민	3.3	13.6	53.9	32.5
기타 <sup>3)</sup>	2.5	52.2	27.8	20.0
귀화자 <sup>4)</sup>	4.1	1.7	36.4	61.9
출신국적				
중국(한국계)	4.3	2.3	21.7	76.0
중국(한국계 외)	3.3	17.8	47.6	34.6
베트남	2.7	32.1	54.8	13.1
기타 아시아 <sup>5)</sup>	3.0	26.0	51.6	22.4
아시아 외 <sup>6)</sup>	3.3	31.7	26.7	41.6

- 주: 1) 국내에 91일 이상 계속 거주한 15세 이상 상주인구를 포함하며, 가중치를 사용하여 계산  
 2) 5점 척도(1: 매우 못함 ~ 5: 매우 잘함)를 사용하여 측정한 한국어능력 4개 영역(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평균임  
 3) 기타는 비전문취업, 방문취업, 전문인력, 유학생, 재외동포, 영주자, 결혼이민자를 제외한 모든 체류자격의 상주외국인을 포함  
 4) 귀화자는 조사연도 기준 5년 이내 귀화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하며, 귀화자의 출신국적은 귀화 이전 국적에 해당  
 5) 중국(한국계 포함), 베트남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 포함  
 6) 아시아 국가 이외의 모든 국가 포함

자료: MDS(통계청·법무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2020), (추출다운로드 일자: 2021.09.24.)

## 제3절 외국인력 정책 현황과 발전 방향

본 절에서는 정부의 외국인력 정책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sup>3)</sup>,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 관계자와 외국인력 사업담당자, 외국인력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표적 집단 면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력 정책의 한계와 발전 방향을 검토한다.

### 1. 외국인력 제도 현황

#### 1.1. 전문 외국인력 제도

전문 외국인력 제도는 해외의 우수 인재 유치와 활용을 위한 제도나 정책, 사업을 포함한다. 현재 법무부를 비롯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여러 부처에서 전문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해외 우수 신진연구자 유치사업(KRF: Korea Research Fellowship)’ 과 ‘해외 고급과학자 초빙사업(Brain Pool)’, ‘국제 장학 프로그램(GKS: Global Korea Scholarship)’, ‘고용추천서제도’, ‘외국인ICT 정책 및 기술전문가 과정’ 등이 있다.<sup>4)</sup>

국내 노동시장에서 취업 활동 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소지한 체류자격(비자)은 이들을 전문인력과 비전문인력으로 구분하는 기본적인 기준이 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소지한 체류자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문인력은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홍행(E-6), 특정활동(E-7)에 해당하는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을 포함한다. 전문인력 중 특정활동(E-7)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다른 전문인력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과 비교할 때 활동 범위가 광범위하다.<sup>5)</sup>

3)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의 취업이나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와 사업에 관한 법적 근거와 의의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최홍엽(2019)에서 살펴볼 수 있다.

4) 한국 정부에서 운영 중인 전문 외국인력 제도와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부처 홈페이지나 강동관 외(2018)에서 살펴볼 수 있다.

5) 전문 외국인력의 체류자격(비자)별 국내 체류 기간의 상한과 활동 범위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절의 특정활동(E-7) 자격에 관한 내용은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1.8.)의

특정활동 자격은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고 하는 사람(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1.8.: 173)’ 을 포함한다. 특정활동 체류자격 소지자의 도입 직종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의 대분류 항목과 직능수준 등을 감안하여 전문직종, 준전문직종, 숙련기능직종으로 구분되며, 2021년 5월 기준 총 86개 직종을 포함한다. 특정활동 비자는 전문성 수준과 국민 대체성 등에 따라 도입, 관리 기준을 달리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석사 이상 또는 학사학위 소지, 1년 이상 또는 5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이 요구된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1.8.: 175~247).

정부는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가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숙련기능인력으로서 국내 노동시장에서 취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숙련기능인력 점수제<sup>6)</sup>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제조업·건설업·농축어업 직종에 정상적으로 취업 활동 중인 외국인 근로자 중 숙련기능인력 점수제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포함된다. 여기서 비전문취업, 선원취업,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의 특정활동 자격으로 변경하는 것은 부여된 쿼터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며 취업 허용 직종은 제조업·건설업·농축어업으로 제한된다. 그와 더불어 내국인 노동시장 보호를 위해 업체당 고용 허용 인원<sup>7)</sup>을 설정하여 운영되고 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1.8.: 175~247).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175~247」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 6) 특정활동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 중 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에는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과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공(S610), 일반 제조업체 및 숙련기능공(S700)이 포함된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1.8.: 195).
- 7) 업체별 최대 5명(제조업·건설업: 5명, 농축어업: 3명)까지 고용이 허용되나 현재 비전문취업 및 선원취업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최소 1명 고용이 허용되며, 업체별 허용 인원의 자세한 기준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1.8.)의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239~243」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2. 비전문외국인력 제도<sup>8)</sup>: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고용허가제는 정부의 대표적인 비전문외국인력 정책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198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 및 활용해 왔으며, 비전문외국인력의 관리를 위해 1993년 산업연수제를 도입하여 시행해 왔으나 임금 체불이나 산업연수생의 불법 체류 확산 등의 부작용이 커지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많은 논의를 거쳐 2004년 8월부터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이규용, 2016: 347~350).<sup>9)</sup>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한 사업체가 적정 규모의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며, 일반고용허가제와 특례고용허가제로 구분된다. 일반고용허가제와 특례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각각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비자를 소지하고, 이들의 유입 규모는 국내 경기와 고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일반고용허가제와 특례고용허가제 외국인의 취업 절차는 [그림 2-4]와 같다.

고용허가제는 노동시장에서 내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자에게 고용센터를 통한 내국인 구인노력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과정에서 브로커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공공부문이 외국인 구직자의 선정, 도입, 알선 등 전반적인 과정을 담당한다.<sup>10)</sup>

8) 비전문외국인력 제도인 고용허가제에 관한 내용은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 홈페이지(eps.go.kr)와 이규용(2016: 347~354), 최홍엽(2019: 389~410)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9) 2004~2006년에는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가 병행하여 운영되었다(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 홈페이지, eps.go.kr).

10) 2021년 8월 기준 한국 정부와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국가는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총 16개 국가이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1.8.: 250).

[그림 2-4] 일반고용허가제와 특례고용허가제 외국인의 취업 절차



자료: 고용노동부 · 한국고용정보원,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 홈페이지(eps.go.kr)

외국인의 관점에서 고용허가제를 통한 국내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취업 절차를 살펴보면, 일반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 노동시장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은 자국에서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여 외국인 구직자 명부에 등재된 후 고용센터 알선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이어서 사전 취업 교육을 이수한 후 송출국가의 대한민국 공관으로부터 비전문취업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한다. 국내 입국 이후 취업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사업장에 배치된다(그림 2-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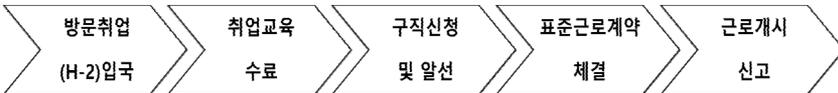
특례고용허가제 외국인의 국내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취업 절차는 [그림 2-6]과 같다.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재외동포가 소정의 취업 교육을 이수한 이후, 고용센터를 통한 알선이나 자율 구직을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취업 활동을 하게 된다. 그와 함께 특례고용허가제 외국인 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근로 개시 신고를 해야 하며, 건설업에 취업한 특례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는 14일 이내에 출입국 사무소에 취업 개시 신고를 해야 한다.

[그림 2-5]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의 고용·취업 절차



자료: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 홈페이지(eps.go.kr)

[그림 2-6] 특례고용허가제 외국인의 고용·취업 절차



자료: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 홈페이지(eps.go.kr)

고용허가제는 단기 순환 원칙에 근거하며,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정주화 방지를 위해 국내 노동시장에서의 취업 활동 기간을 3년(1회 부여 기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가 고용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재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귀국 조치 없이 1년 10개월 범위에서 취업 활동 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사업체에서 비전문 숙련외국인력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재입국특례고용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사업주가 「재입국특례고용허가제도」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활동 기간(4년 10개월)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외국인 근로자를 성실근로자로서 고용 허가를 신청할 경우 출국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 다시 국내 노동시장에서 취업 활동(최대 1회, 최대 4년 10개월)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sup>11)</sup> 그와 함께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사업장의 휴·폐업, 임금 체불 등으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이 최대 3회까지 허용된다.

고용허가제의 취업 허용업종과 관련하여 2020년 기준 일반고용허가제는 제조업과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일부 서비스업(5개 업종)을 포함하며 특례고용허가제는 일반고용허가제에서 허용하는 업종 이외에 다수의 서비스업을 포함한다.<sup>12)</sup>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규모와 관련하여 특례고용허가제의 경우에는 2010년부터 총량 관리를 통해 업종별 배정을 하고 있지 않으며, 일반고용허가제 허용업종별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규모는 <표 2-12>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규모는 2021년 기준 5만 2,000명이며, 업종별 도입 규모 배분은 제조업이 37,700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농축산업(6,400명), 어업(3,000명) 순이다.

1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외국인고용법)」의 제18조의 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에 의하면 재입국특례자에 대한 재입국 제한 기간은 최근 2021년 10월 14일부터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일: 2021.4.13.).

12) 일반고용허가제와 특례고용허가제의 취업 허용업종을 비롯한 연혁, 운영조직, 사업장 규모별 구인인원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의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 홈페이지(ep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2-12〉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업종별 도입 쿼터 현황: 2021년

(단위: 명)

구분	일반(E-9)	재입국취업자	총계
제조업	27,400+ $\alpha$	10,300	37,700+ $\alpha$
건설업	1,780+ $\alpha$	20	1,800+ $\alpha$
서비스업	80+ $\alpha$	20	100+ $\alpha$
농축산업	5,090+ $\alpha$	1,310	6,400+ $\alpha$
어업	2,650+ $\alpha$	350	3,000+ $\alpha$
인원	40,000(37,000+ $\alpha$ )	12,000	52,000(49,000+ $\alpha$ )

자료: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의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 홈페이지(eps.go.kr)의 ‘연도별 도입 쿼터 안내-도입 근로자의 체류자격별·업종별 배분’을 인용

이어서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EIS)의 외국인통계를 활용하여 고용허가제의 운영 현황을 살펴본다. 〈표 2-13〉에서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연도별 구인 신청 인원과 근로계약 체결 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구인 신청 인원은 2015년 18만 6천 명을 기점으로 감소하여 2020년 기준 13만 명에 그쳤다. 구인 신청자 대상의 고용허가서 발급 건수와 근로계약 체결 건수의 비중은 2015년 각각 31.3%와 30.1%에서 2019년 38.2%와 37.5%까지 증가하였으나, 2020년에는 그 비중이 각각 30.8%와 29.4%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3〉 일반고용허가제 근로계약 체결 현황

(단위: 명, 건, %)

연도	구인신청 인원 수	고용허가서 발급건	근로계약 체결건
2015년	186,106 (100.0)	58,184 (31.3)	55,971 (30.1)
2016년	210,074 (100.0)	62,653 (29.8)	61,148 (29.1)
2017년	226,541 (100.0)	57,971 (25.6)	56,600 (25.0)
2018년	171,445 (100.0)	57,582 (33.6)	56,110 (32.7)
2019년	140,948 (100.0)	53,808 (38.2)	52,816 (37.5)
2020년	130,014 (100.0)	40,067 (30.8)	38,288 (29.4)

주: ( )는 비중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EIS) 외국인통계

일반고용허가제의 특성별 외국인 근로자 도입 현황을 <표 2-14>를 통해 살펴보면, 2015년 12월 말 기준 51,019명이 일반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입국하였으며 매년 5만 명 이상 규모를 유지하다가 2019년 12월 발생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그 규모가 6,688명까지 감소하였다. 매년 일반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유형은 2015~2019년 신규 입국이 6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2020년에는 신규 입국 비중이 54.6%에 그쳤다.

<표 2-14> 일반고용허가제 도입 건수 현황: 도입 구분 및 국가별

(단위: 건,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체	51,019	59,822	50,837	53,855	51,365	6,688
도입 구분 <sup>1)</sup>						
신규 입국	79.6	70.7	68.9	76.2	72.4	54.6
재입국	20.4	29.3	31.1	23.8	27.6	45.4
국가 <sup>2)</sup>						
베트남	9.6	11.9	11.5	7.0	12.6	3.9
필리핀	9.0	8.1	8.5	8.8	8.9	6.1
태국	10.0	10.4	11.4	11.5	10.2	9.4
몽골	2.3	1.7	2.7	1.5	1.5	0.9
인도네시아	10.7	9.5	7.3	12.9	12.1	9.6
스리랑카	9.8	11.1	6.8	6.3	7.0	7.5
중국	0.5	0.9	0.5	0.6	0.3	0.4
우즈베키스탄	5.3	4.1	5.2	4.2	3.3	1.4
파키스탄	1.3	1.0	1.2	1.4	1.0	0.7
캄보디아	15.3	13.9	15.0	12.3	15.1	32.5
네팔	11.4	13.4	14.7	15.6	13.8	14.3
미얀마	8.8	9.6	10.6	11.8	9.2	10.5
키르기스스탄	0.6	0.4	0.4	0.7	0.3	0.2
방글라데시	4.4	3.4	3.5	4.4	3.2	2.1
동티모르	0.9	0.9	0.7	0.7	1.1	0.4
라오스	0.0	0.0	0.0	0.3	0.3	0.3

주: 도입 건수에 대한 비중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EIS) 외국인통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출신국가 비중을 위의 <표 2-14>를 통해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캄보디아 출신이 15.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네팔(13.8%), 베트남(12.6%), 인도네시아(12.1%), 태국(10.2%) 순으로 비중이 높다. 반면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가 간 인구가동이 제한됨에 따라 2020년 일반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출신국가 비중은 2019년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2020년 기준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32.5%는 캄보디아 출신이며 네팔(14.3%), 미얀마(10.5%) 순으로 비중이 높다.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인적 특성과 관련해서는,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대다수는 남성이며, 2019년보다 2020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10% 내외의 비중을 불과하다.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60% 이상은 30세 미만이며, 특히 신규 입국자의 경우 25세 미만이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재입국 외국인 근로자의 연령대 구성을 살펴보면, 25세 미만이나 40-50세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 미만으로 낮고 25-40세 미만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교육수준과 관련해서는 2020년 기준 이들 중 62%가 교육수준이 고졸에 해당하며, 교육수준이 중졸 이하와 대졸 이상인 비중은 각각 26.5%와 10.6%이다(<표 2-15> 참조).

이어서 특례고용허가제 운영 현황을 <표 2-16>에서 살펴보면, 외국국적동포 대상의 신고 취업 건수, 고용확인서 발급 건수는 2015년 이후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외국국적동포가 방문취업 자격을 받아 국내에 입국한 이후 고용센터를 통해 구직 신청을 한 경우는 2020년 기준 48,717건으로 2019년의 53.5%에 그쳤으며, 고용확인서 발급 건수와 신고 취업 건수도 2019년보다 각각 약 1,900건, 약 9,000건 감소하였다.

<표 2-15> 일반고용허가제 도입 건수 현황: 인적 특성별

(단위: 건, %)

구분	2019년			2020년		
	신규 입국	재입국	전체	신규 입국	재입국	전체
도입 건수	37,213	14,152	51,365	3,650	3,038	6,688
성별 <sup>1)</sup>						
남성	92.6	93.9	92.9	89.9	86.1	88.2
여성	7.4	6.1	7.1	10.1	13.9	11.8
연령 <sup>1)</sup>						
25세 미만	41.2	1.0	30.2	48.2	3.9	28.1
25~30세 미만	33.6	41.7	35.9	31.6	51.3	40.5
30~40세 미만	24.6	53.4	32.5	19.8	40.5	29.2
40~50세 미만	0.6	3.8	1.5	0.4	4.4	2.2
교육수준 <sup>1)2)</sup>						
중졸 미만	2.0	2.7	2.2	2.4	2.4	2.4
중졸	20.1	22.0	20.6	23.1	25.2	24.1
고졸	63.9	59.4	62.7	63.9	59.7	62.0
대졸 이상	13.8	11.6	13.2	10.4	10.8	10.6

주: 1) 도입 건수에 대한 비중임

2) 교육수준이 무관인 경우를 포함하지 않아 교육수준별 비중의 합이 100이 되지 않음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EIS) 외국인통계

<표 2-16> 특례고용허가제 현황

(단위: 명, 건)

연도	구직신청 건수	구인신청 인원수 <sup>1)</sup>	신고취업 건수 <sup>2)</sup>	고용확인서 발급 건수	고용변경 확인서 발급 건수
2015년	91,772	75,699	38,724	14,693	1,812
2016년	70,813	64,224	31,924	14,581	1,303
2017년	82,145	59,924	28,203	14,944	1,141
2018년	86,142	49,570	23,985	11,696	946
2019년	91,068	49,278	25,418	12,424	933
2020년	48,717	38,038	16,166	10,561	623

주: 1) 구인신청 인원수는 고용허가서 신청 일자 기준 특례고용가능확인서상 모집 인원수임

2) 신고 취업 건수는 고용허가서 발급 일자 기준 근로 개시가 공식 신고된 자에 해당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EIS) 외국인통계

<표 2-17>과 <표 2-18>은 2020년 12월 기준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유형과 특성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서 특례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수는 고용센터에 공식적으로 신고된 자에 한정되므로, 실제 국내 노동시장에서 취업 활동 중인 특례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수와는 차이가 있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2-17>에서 살펴보면 2020년 12월 기준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수는 61,337개이며,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수와 특례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수는 각각 181,073명, 24,555명이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을 고용허가제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75%(45,973개)를 차지하며 특례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19.3%(11,841개),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와 특례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모두 고용하는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5.7%(3,523개)를 차지한다.

이어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의 특성을 <표 2-18>에서 살펴보면, 사업체의 업종은 제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서비스업(12.8%), 농축산업(12.4%), 어업(7.6%) 순으로 비중이 높다. 업종별 외국인 근로자 수와 관련해서는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81.1%가 제조업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으며 특례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또한 제조업 사업체 종사 비중이 54.9%로 높은 하나 서비스업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비중도 41.2%에 달한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의 규모와 관련해서는 30인 이하 사업체가 전체 사업체의 86.9%를 차지하며, 그중 39.4%는 4인 이하 사업체이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의 소재지별 비중은 [그림 2-7]과 같다. 전체 사업장의 47%가 인천·경기에 위치하며 경북·경남(20%), 충북·충남(13%) 순으로 비중이 높다. 그와 더불어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종사 중인 사업장의 위치가 서울인 비중이 1%에 그쳤으나 특례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고용신고에 공식적으로 신고된 근로자만을 포함)의 경우에는 종사 중인 사업장의 위치가 서울인 비중이 19.7%로 높다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 외국인통계, 2021).

<표 2-17> 사업장 유형별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수: 2020년 12월 기준

(단위: 개, 명)

구분	사업장 수	일반외국인 근로자 수	특례외국인 근로자 수 <sup>1)</sup>	외국인 근로자 수 <sup>2)</sup>
전체	61,337	181,073	24,555	205,628
일반고용허가제업체	45,973	160,083	0	160,083
특례고용허가제업체	11,841	0	17,473	17,473
일반 + 특례고용허가제업체	3,523	20,990	7,082	28,072

주: 1) 고용센터에 공식적으로 신고된 근로자만을 포함

2) 외국인 근로자 수: 일반외국인 근로자 수+특례외국인 근로자 수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EIS) 외국인통계

<표 2-18> 사업체 특성별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현황: 2020년 12월 기준

(단위: 개, 명, %)

구분	사업장 수	일반외국인 근로자 수	특례외국인 근로자 수 <sup>1)</sup>	외국인 근로자 수 <sup>2)</sup>
전체	61,337	181,073	24,555	205,628
업종 <sup>3)</sup>				
제조업	66.0	81.1	54.9	78.0
건설업	1.2	3.5	3.2	3.5
농축산업	12.4	11.4	0.6	10.1
서비스업	12.8	0.2	41.2	5.1
어업	7.6	3.8	0.1	3.3
사업체 규모 <sup>3)</sup>				
4인 이하	34.2	13.4	27.7	15.1
5~10인 이하	25.7	20.4	20.4	20.4
11~30인 이하	27.0	36.2	28.8	35.4
31~50인 이하	7.0	13.8	11.1	13.5
51~100인 이하	4.0	9.4	7.0	9.1
101~200인 이하	1.6	5.1	3.6	4.9
201~300인 이하	0.4	1.3	1.0	1.3
300인 이상	0.1	0.3	0.2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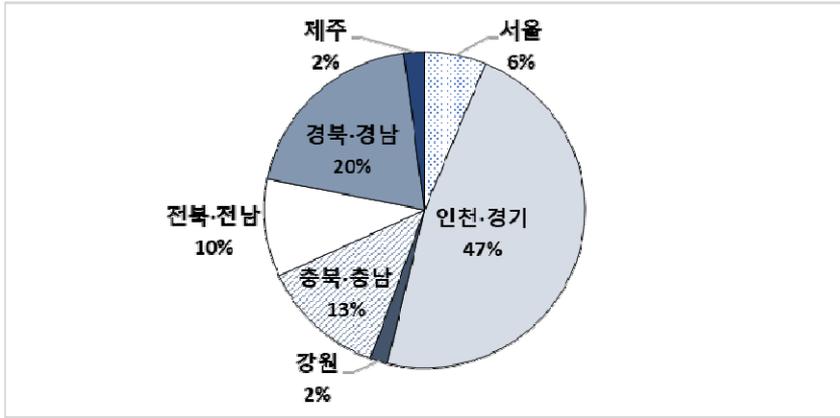
주: 1) 고용센터에 공식적으로 신고된 근로자만 포함

2) 외국인 근로자 수: 일반외국인 근로자 수+특례외국인 근로자 수

3) 전체에 대한 비중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EIS) 외국인통계

[그림 2-7] 고용허가제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소재지 비중: 2020년 12월 기준



주: 광역시는 각 도에 포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EIS) 외국인통계

## 2.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관리 실태와 외국인력 정책의 발전 방향: 표적 집단 면접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통계자료로는 살펴보기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관리 실태와 외국인력 정책의 한계점을 파악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의 관계자,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운영과 외국인 근로자 관련 민원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표적 집단 면접조사를 수행하였다. 면접조사는 외국인 고용 사업체 2개 그룹과 외국인력 사업담당자 1개 그룹, 외국인력 관련 전문가 1개 그룹을 대상으로 2021년 10월 8일부터 2021년 10월 1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표적 집단 면접조사의 대상에 관한 간략한 정보는 <표 2-19>와 같다.

〈표 2-19〉 표적 집단 면접조사 참여자 현황

구분	참여자 수	참여자 유형	업종
그룹 A	5명	외국인 고용 업체	· 제조업 4개 업체 · 농축산업 1개 업체
그룹 B	6명	외국인 고용 업체	· 제조업 4개 업체 · 농축산업 2개 업체
그룹 C	5명	외국인력 사업담당자	
그룹 D	3명	외국인력 관련 전문가	

## 2.1.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과정

사업주가 일반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한 사업주에 한정하여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표적 집단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는 고용허가서 신청 같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복잡한 서류와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이후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운영이 방문 예약제로 전환되면서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민원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었다. 그와 더불어 일부 고령 사업자들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 IT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방문 예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요즘 전산화가 되어서 다 연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관리사무소별로 신고해야 해서 저희가 이중삼중으로 해야 하는 업무들이 있어요.” (제조업체 인사담당자)

“출입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7월부터 전면적으로 방문 예약제로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많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서는 방문을 하려고 예약을 들어갔을 때 예약할 수 있는 날짜가 없어요 (중략) 연세가 많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상은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력 사업담당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입국이 제한되면서 일부 사업체에서는 취업 활동이 가능한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나 내국인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용직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험이 있는 사업체에서는 일용직 내국인 근로자의 높은 임금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인력도 단절되고 인력 결손이 생겨서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거주(F-2) 비자인 분들을 채용하게 됐습니다.” (제조업체 경영주)

“올해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양파, 마늘 한 참 캐 때 외국인 근로자의 하루 일당이 18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중략) 일은 일대로 안 되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이렇게 되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게 되고 굉장히 힘들지요” (농축산업 경영주)

“일용직을 채용하거나, 내국인이요 정규직으로는 잘 안 오려고 하거든요 (중략) (외국인 고용) 좀더 안정되고 일 가르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안정적인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조업체 인사담당자)

## 2.2.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이동

일반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 인사담당자들에 따르면 적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더 나은 근무환경과 더 높은 임금을 얻기 위해 사업장 변경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이전보다 크게 제한된 상황에서 경기까지 침체되고 일부 제조업체의 가동률이 하락하면서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이나 더 높은 임금을 얻을 수 있는 사업체로 외국인 근로자가 이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워낙 외국인 고용 수급이 어렵다 보니까 비자 기간이 충분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탈하는 이런 사례도 좀 빈번하고 1년 이상 비자가 남았는데도 그냥 더 일단 많이 주니까 가는 거지요 체류 기간

이 남아 있고 정상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간단 말이에요 ” (농축산업 경영주)

“잔업이 많은 곳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고의 직종이에요 가동률이 떨어지니까 여기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 (제조업체 인사담당자)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들은 연장근무에 따른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고용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탈을 방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탈이나 변경과 관련해서는 농축산업이나 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하여 제조업 분야 사업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제한된 가운데 국내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줄지 않아 미등록외국인의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다고도 지적하였다.

“잔업을 많이 하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중략) 외국인 근로자들이 네트워킹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어디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를 받는다. 사장님이 얼마를 더 추가로 줬다.’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 (제조업 경영주)

“제조업종에서 지금 인력이 계속 부족하고 올해 신규로 들어온 어업이나 농업 쪽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탈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체류 기간이 남아 있거나 지금 1년 직권이 연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탈률이 굉장히 높아요 (하략) ” (외국인력 사업담당자)

“불법체류자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되는 거지요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높아 가고 있다 보니까 특히 인력이 부족한 곳에서는 어차피 인력을 고용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력 사업담당자)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이나 이탈의 주된 원인은 임금인 것으로 보이나 근무지 환경도 중요한 원인으로 언급되었다. 또한 국내 노동시장에서 취업 활동 중인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부 외국인 근로자가 이를 악용하여 사업장을 변경하거나 업종 전환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 사업장을 변경한 외국인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일부 사업체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단지에는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하고 3D 업종, 그야말로 힘든 업종하고 농업단지에 있으면서 툭 떨어져 있는 그런 사업장에 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이 사업장 변경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인력 사업담당자)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려고 하는 외국인이 갑자기 변심해서 무단결근을 해요 그랬을 경우에 사업주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합의해서 고용 해지하는 거예요 외국인 근로자가 무단이탈해서 퇴사를 하게 되면 관리 소홀로 사업장에 배정된 외국인 근로자 쿼터 한 명이 줄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력이 필요한데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지 이탈을 하면, 서로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고용해지 합의하는 거예요.”* (제조업체 경영주)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이나 이탈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내에 가족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지를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우선 배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이나 이탈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 변경 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현행 규제를 폐지함과 동시에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장의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부분 가족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1순위, 2순위, 3순위로 먼저 해서 매칭을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그렇게 매칭을 해서*

하면 사업장 변경 사유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략) ” (외국인력 사업담당자)

“사업장 변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방법은 사업장 변경을 금지하는 규제를 없애면 돼요. (중략) 외국인 근로자들을 계속적으로 고용하려면 근로조건이나 작업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하략)” (외국인력 사업담당자)

### 2.3. 외국인력 정책의 평가와 개선 방향

외국인력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의 외국인력 정책이 취업 관련 체류자격 이외의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를 배제한 채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 관리가 여러 부처에서 이루어지므로 실제 국내 노동시장에서 취업 활동 중인 모든 외국인 근로자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의 수립이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현재로서는 외국인력을 전체로 보는 법이 돼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고용허가제는, 그러니까 비전문의 E-9의 H-2만 하는 거고 나머지는 법무부가 유관 부처하고 해서 이걸 정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근로자 전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법 체류 관리적인 관점과 고용관리의 관점, 노동시장의 관점을 버무려서 같이 고민하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가면서 이걸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인력 중에 비취업 비자가 50% 가까이가 지금 외국인 근로자 중에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어서 (중략) 이것이 좀 앞으로 많이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외국인력 전문가)

“(상략) 고용정책은 체류 정책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져서 가꿔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부처 간의 협업이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외국인력 전문가)

그와 더불어 고용허가제의 쿼터가 현상이나 미래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배정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농축산업, 어업 분야의 기준선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우선 쿼터를 산정하는 방식 자체가 조금 많이 개선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업종별로도 있지만 직군별로도 다 이런 상황이 지역별로도 상황이 다른데 이걸 업종별로 전체 쿼터하고 업종별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현장에 실제 그 상황하고 맞는가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오래전부터 논의돼 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쿼터를 좀 구체적으로 현장의 수요와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 비전과 고려해서 만들 것이지 가장 크게 고민이 되는...” (외국인력 전문가)

“제가 농축산업 이야기를 계속하는 건 뭐냐하면 정말 제조업에 비해서 힘든 일을 더 많이 해요 그런데 시간 외 수당이라고 불러도 왜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탈률도 굉장히 높거든요 (중략) 제조업하고 농축산업하고 어업은 약간의 가이드라인도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외국인력 사업담당자)

숙련기능점수제는 보완할 사항이 현재로는 적지 않으나 국내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제도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해당 비자의 취득이 까다롭고 유지 또한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에서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취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숙련기능인력의 체류 기간이 현 수준보다 더 연장되거나 본국 귀환 없이 숙련기능인력 비자의 취득이 가능하기를 희망하기도 하였다.

“숙련기능점수제 같은 경우에도 저는 점수제의 배점 방식이나 쿼터제 설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비전문인력들이 한국에 정착해서 자신의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통로(경

로)를 마련해 준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어요 (하략)” (외국인력 전문가)

“외국인 숙련기능접수제 비자 제도 같은 경우는 이전에 비해서 변화 요건이 너무 까다롭고 규모도 제한적이고, (중략) 그렇게 많은 조건을 갖추면 된다고는 하는데 가능성이 제한적이라서...” (외국인력 전문가)

“E-7(특정활동) 비자로 바꾸기 위해서 브로커까지 생겼어요 (중략) 너무 까다롭고 준비해야 하는 자료, 보완해야 할 자료가 정상적으로는 어려워요 (하략)” (제조업체 인사담당자)

“일자리를 유지해야 하고, 소득도 어느 쪽으로 유지해야 하고, 어느 정도 자산이 있어야 하고, 한국어도 돼야 되고 이런 기준들은 마련해 놨는데 이런 기준에서 실제로 얼마나 그런 자격을 바꾸고, 바꾸고 나서는 그걸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는 부분은 아직 좀 부족하지 않나, 유치를 하거나 전환을 시키는 데는 굉장히 집중했는데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외국인력 전문가)

“(상략) 저희도 숙련기술공으로 할 만한 친구가 지금 있는데 그 친구를 내보내야 하는 게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중략) 기존에 근무하던 친구들도 9년 8개월 최장, 그 정도가 아니라 다만 한 5년, 2-3년 정도라도 더 근무를 할 수 있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 큰 이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조업체 인사담당자)

“주요 인력 중에 대부분이 내년 9월에 다 만기예요. 입국이 단절된 그 기간에 이걸 현재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혜택을 줘서 그 기간만큼 그냥 그대로 연장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사실은 인력이 나갈 것을 대비해서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교육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제한되었잖아요. 외국인 근로자가 단순 노

동을 하지 않아요. 주요 생산인력입니다. 사실은 숙련공들이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체류 연장이 되면 고용 연장까지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하략) ” (제조업체 인사담당자)

또한 전문가 집단과 외국인력 사업담당자는 정부의 외국인력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별 인구구조나 산업구조의 차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외국인력의 도입 규모 산정 시 실제적인 지자체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관련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로컬, 그러니까 사실 이게 너무 편차가 크잖아요. 직군별로도 지역별로도 상황이 산업구조도 다르고 인구의 어떤 현황도 다르고 이런 편차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중앙에서 그것을 어떤 카테고리를 가지고 하기에는 그게 너무 와 닿지 않을 것 같아요. 로컬 단위에서의 그런 어떤 노동시장 정책과 관련된 어떤 논의에 지자체의 어떤 정부가 됐든, 지역 시민사회가 됐든 그런 목소리가 더 이렇게 정책에 인입이 돼야만 그게 좀 변화가 될 것 같아요.” (외국인력 전문가)

“외국인력 정책은 중앙 주도적으로 돼 있어요. (중략) 지역 그게 어떤 수요가 좀더 이렇게 명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 (외국인력 전문가)

“외국인력을 적절히 공급하는 것은 제조업 정도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고용허가제가 사실 제조업 중심의 제도인 거잖아요. 식량 문제는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하는 산업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업에 맞는, 어업에 맞는 외국인력 제도를 사실 농업 정책과 같이 가야 하는 거지요.” (외국인력 사업담당자)

마지막으로 내국인 인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산업 및 업종에 외국인력을 공급하기 이전에 내국인 공급이 해당 산업과 업종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시장의 내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이 제시되었다. 또한 외국인력의 도입에 초점을 둔 기존 외국인력 정책이 외국인의 정착을 위한 제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공급 위주로 그 기업이 어렵고 인력 구하기 힘들 때 그 기업이 정말 힘들다면 인력을 줘야지, 우리가 너무 이런 기조로 지금까지 정책을 해 왔어요 그런데 캐나다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달라고 한다고 다 공급해 주는 나라는 없어요. ‘극복해야 돼, 외국인을 쓰되 내국인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거나 아니면 산업을 다른 직종으로 바꾸는 것도 생각해 봐야 돼’ 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외국인을 쓰는 기업에다가 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주지를 않았어요 (하략)” (외국인력 전문가)

“외국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그런 산업정책이나 노동정책,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력을 도입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정책들을 개선하면 좋겠다.” (외국인력 전문가)

“외국인이 국내에 취업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접근성은 조금 많이 확대가 됐어요 정착을 위한 어떤 전방위적인 노력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점...” (외국인력 전문가)

“유치, 전환 이게 중요하지만 육성이라는 개념이 좀더 진지하게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 그 육성은 인적자본을 더 활용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사람으로 보는, 인력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고 체류자격을 이렇게 그냥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생애 발전의 경로를 개척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열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외국인력 전문가)

## 제3장

# 이민자의 경제활동 실태와 고용구조

본 장에서는 통계청·법무부의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를 활용하여 국내에 91일 이상 거주 중인 15세 이상 이민자의 주요 고용지표를 살펴본다. 또한 실증분석을 통해 취업 관련 이외의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과 귀화자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국내 노동시장에서 취업 활동 중인 이민자의 산업별, 직업별 분포를 살펴본다.

통계청·법무부의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경제활동 실태를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조사자료이다. 그러나 해당 자료에서 포함하는 귀화자에는 조사연도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만 포함되므로 실제 국내 노동시장에서 취업 활동 중인 귀화자 규모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 제1절 이민자의 경제활동 실태

### 1. 이민자의 경제활동 현황

통계청·법무부(KOSIS, 각 연도)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15세 이상 이민자 138만 명 중 경제활동인구는 94만 9천 명으로 2017년보다 약 4만 명 증가하였다. 15세 이상 이민자의 주요 고용지표를 2017년과 2020년을 비교해 보면, 2020년 5월 기준 15세 이상 이민자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2017년보다 각각 2.1%p, 4.4%p가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2017년보다 3.6%p 상승하였다(〈표 3-1〉 참조).

2019년 12월 발발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는 이민자의 주요 고용지표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5월 기준 15세 이상 이민자의 고용률은 2019년보다 1.7%p 감소한 63.5%이며 실업률은 2019년보다 2.1%p 상승한 7.6%에 달한다. 이러한 이민자의 주요 고용지표의 변화는 그들의 한국 국적 취득 여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2020년 5월 기준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2019년보다 각각 4.9%p, 5.7%p 감소하였으나, 외국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2019년 대비 2020년에 각각 0.2%p, 1.6%p 감소한 데 그쳤다(〈표 3-1〉 참조). 또한 외국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나 고용률은 그들의 세부 체류자격에 따라 차이가 있다. 통계청·법무부(KOSIS, 2021)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15세 이상 외국인의 약 30%를 차지하는 취업 관련 체류자격(전문인력, 비전문취업, 방문취업)을 소지한 외국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70%를 상회하며, 특히 비전문취업이나 전문인력 관련 체류자격 소지자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90% 이상으로 매우 높다.

취업 관련 체류자격은 아니나, 국내 노동시장에서 특정 업종이나 분야에서 취업 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영주자의 경우 76%에 달하며 재외동포(68%), 결혼이민(55%), 유학생(27%) 순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높다(통계청·법무부, 2021). 이처럼 취업 관련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 중 상당수가 국내 노동시장에서 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은 정부의 외국인 대상 노동정책의 수립과 보완 과정에서 취업 관련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뿐 아니라 취업 관련 이외의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검토 또한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3-1〉 이민자<sup>1)</sup>의 주요 고용지표

(단위: 천 명,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체				
15세 이상 인구	1,278.0	1,353.0	1,371.4	1,380.4
경제활동인구	904.3	965.4	947.2	948.5
(경제활동참가율 <sup>2)</sup> )	(70.8)	(71.4)	(69.1)	(68.7)
취업자	868.0	918.8	894.8	876.7
(고용률 <sup>3)</sup> )	(67.9)	(67.9)	(65.2)	(63.5)
실업자	36.3	46.6	52.4	71.8
(실업률 <sup>4)</sup> )	(4.0)	(4.8)	(5.5)	(7.6)
외국인				
15세 이상 인구	1,225.3	1,300.8	1,322.6	1,331.8
경제활동인구	868.7	929.1	913.6	917.4
(경제활동참가율 <sup>2)</sup> )	(70.9)	(71.4)	(69.1)	(68.9)
취업자	834.2	884.3	863.2	847.9
(고용률 <sup>3)</sup> )	(68.1)	(68.0)	(65.3)	(63.7)
실업자	34.5	44.8	50.3	69.5
(실업률 <sup>4)</sup> )	(4.0)	(4.8)	(5.5)	(7.6)
귀화자 <sup>5)</sup>				
15세 이상 인구	52.7	52.3	48.8	48.6
경제활동인구	35.6	36.3	33.6	31.1
(경제활동참가율 <sup>2)</sup> )	(67.6)	(69.4)	(68.9)	(64.0)
취업자	33.8	34.6	31.6	28.7
(고용률 <sup>3)</sup> )	(64.1)	(66.2)	(64.8)	(59.1)
실업자	1.8	1.7	2.0	2.4
(실업률 <sup>4)</sup> )	(5.1)	(4.7)	(6.0)	(7.7)

주: 1) 이민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를 모두 포함하며, 조사시점 기준 한국에 91일 이상 계속 거주한 상주인구에 해당함

2)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취업자,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임

3)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임

4)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임

5) 귀화자는 조사연도 기준 최근 5년 이내 귀화 허가를 받은 자만 포함

자료: KOSIS(통계청·법무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각 연도)

국내 노동시장에서 취업 활동 중인 이민자(이하 이민 배경 취업자)의 체류 자격 구성은 다음의 <표 3-2>와 같다. 2020년 5월 기준 이민 배경 취업자의 3.3%는 최근 5년 사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이며, 96.7%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이다. 2020년 5월 기준 전체 외국인 취업자의 29.6%는 비전문취업 체류자격 소지자이며, 재외동포(24.2%), 방문취업(13.8%), 영주자(9.4%) 순으로 비중이 높다. 방문취업 자격의 취업자가 외국인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20%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20년에는 그 비중이 13.8%에 그쳤으나, 재외동포 자격의 취업자가 외국인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21.8%에서 2020년에는 24.2%로 소폭 증가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전히 외국국적동포가 전체 외국인 취업자 중 40% 내외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취업 관련 이외의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 취업자가 전체 외국인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44.8%에서 2020년에는 52%로 증가하였다.

<표 3-3>에서 이민 배경 취업자의 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2020년 5월 기준 전체 이민 배경 취업자의 66.2%는 남성이다. 연령대별로는 30~39세가 3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15~29세의 비중도 25.1%에 달한다. 이민자의 연령대 구성을 2017년과 2020년간 비교해 보면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30~39세와 60세 이상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소폭 상승하였다.

이어서 이민 배경 취업자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2020년 5월 기준 이민 배경 취업자의 42.8%는 고졸자이며 대졸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비중도 30.2%에 달한다. 교육수준이 중졸 이하인 이민 배경 취업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30.7%에서 2020년 27%로 감소하였다. 2020년 5월 기준 이민 배경 취업자의 90.4%는 아시아 국가 출신으로 이들의 41.8%는 한국계 중국 출신이다. 아시아 이외 국가 출신 이민 배경 취업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7.2%에서 2020년 9.6%로 증가하긴 하였으나, 여전히 아시아 이외 국가 출신 이민 배경 취업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에 그쳤다(<표 3-3> 참조).

〈표 3-2〉 체류자격별 이민 배경 취업자<sup>1)</sup> 현황

(단위: 천 명,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체	868.1 (100.0)	918.9 (100.0)	894.9 (100.0)	876.5 (100.0)
외국인_소계	834.3 (96.1)	884.3 (96.2)	863.3 (96.5)	847.8 (96.7)
비전문취업(E-9)	255.6 (30.6)	262.1 (29.6)	260.8 (30.2)	251.1 (29.6)
방문취업(H-2)	166.7 (20.0)	170.5 (19.3)	158.1 (18.3)	117.2 (13.8)
전문인력(E-1-E-7)	38.2 (4.6)	36.6 (4.1)	38.4 (4.4)	38.7 (4.6)
유학생 (D-2, D-4-1, D-4-7)	12.4 (1.5)	19.6 (2.2)	23.0 (2.7)	27.2 (3.2)
재외동포(F-4)	181.6 (21.8)	199.1 (22.5)	194.5 (22.5)	205.1 (24.2)
영주자(F-5)	74.8 (9.0)	78.6 (8.9)	76.7 (8.9)	79.7 (9.4)
결혼이민(F-2-1, F-6)	52.0 (6.2)	60.1 (6.8)	56.2 (6.5)	61.9 (7.3)
기타	53.0 (6.4)	57.7 (6.5)	55.6 (6.4)	66.9 (7.9)
귀화자 <sup>2)</sup>	33.8 (3.9)	34.6 (3.8)	31.6 (3.5)	28.7 (3.3)

주: 1)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를 모두 포함하며, 조사 시점 기준 한국에 91일 이상 계속 거주한 상주인구에 해당함

2) 귀화자는 조사연도 기준 최근 5년 이내 귀화 허가를 받은 자만 포함

3) 비전문취업과 방문취업, 전문인력, 유학생, 재외동포, 영주자, 결혼이민자, 기타의 비중은 외국인 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4) ( )는 비중임

자료: KOSIS(통계청·법무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각 연도)

〈표 3-3〉 인적 특성별 이민 배경 취업자<sup>1)</sup> 현황

(단위: 천 명,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체	868.0	(100.0)	918.8	(100.0)	894.8	(100.0)	876.7	(100.0)
성별								
남성	567.3	(65.4)	597.5	(65.0)	587.9	(65.7)	580.6	(66.2)
여성	300.7	(34.6)	321.4	(35.0)	306.8	(34.3)	296.0	(33.8)
연령대								
15~29세	233.8	(26.9)	239.6	(26.1)	234.3	(26.2)	220.3	(25.1)
30~39세	267.9	(30.9)	286.1	(31.1)	288.1	(32.2)	293.5	(33.5)
40~49세	166.0	(19.1)	176.3	(19.2)	160.8	(18.0)	154.2	(17.6)
50~59세	142.3	(16.4)	156.5	(17.0)	150.1	(16.8)	140.5	(16.0)
60세 이상	58.0	(6.7)	60.4	(6.6)	61.5	(6.9)	68.2	(7.8)
교육수준								
중졸 미만	76.9	(8.9)	75.1	(8.2)	70.7	(7.9)	71.8	(8.2)
중졸	189.2	(21.8)	177.4	(19.3)	167.8	(18.8)	164.8	(18.8)
고졸	349.1	(40.2)	410.5	(44.7)	391.1	(43.7)	375.1	(42.8)
대졸 이상 <sup>2)</sup>	252.8	(29.1)	255.9	(27.9)	265.0	(29.6)	265.0	(30.2)
출신국적 <sup>3,4)</sup>								
아시아	805.7	(92.8)	852.4	(92.8)	826.1	(92.3)	792.8	(90.4)
중국(한국계)	377.2	(46.8)	390.7	(45.8)	365.5	(44.2)	331.7	(41.8)
중국(한국계 외)	55.0	(6.8)	56.6	(6.6)	49.9	(6.0)	46.6	(5.9)
베트남	77.7	(9.6)	91.0	(10.7)	87.9	(10.6)	95.6	(12.1)
기타 아시아	295.8	(36.7)	314.1	(36.8)	322.9	(39.1)	318.9	(40.2)
아시아 외	62.3	(7.2)	66.4	(7.2)	68.7	(7.7)	83.9	(9.6)

주: 1)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를 모두 포함하며, 조사 시점 기준 한국에 91일 이상 계속 거주한 상주인구에 해당함

2) 대졸 이상은 전문대졸 포함

3) 귀화자의 국적은 귀화 전 국적에 해당

4) 중국(한국계, 한국계 외), 베트남, 기타 아시아의 비중은 아시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5) ( )는 비중임

자료: KOSIS(통계청·법무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각 연도)

## 2. 비취업자격 이민자의 취업 결정요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노동시장에서는 취업 관련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을 비롯하여 취업 관련 이외의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 또한 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 단기 순환 원칙을 토대로 하는 정부의 외국인력 정책 특성에 따라 취업 관련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의 규모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취업 관련 이외의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과 귀화자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통계청·법무부의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서 포함하는 귀화자가 조사연도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한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노동시장에서 취업 활동 중인 이민자는 2020년 5월의 87만 7천 명(통계청·법무부, 2021)을 상회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정부의 외국인력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내 노동시장에서 취업 활동 중인 이민 배경 인구의 다양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취업 관련 이외의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 및 귀화자(이하 비취업자격 이민자)의 취업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또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개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그들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별 비취업자격 이민자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각각 살펴본다. 비취업자격 이민자의 취업 결정요인 분석에는 통계청·법무부의 「2020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였다.<sup>13)</sup> 실증분석에는 종속변수가 취업 또는 미취업과 같이 두 개의 값을 갖는 이항변수(binary variable)일 때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프로빗모형(probit model)을 사용하였다.

비취업자격 이민자의 취업 결정요인 분석 결과는 <표 3-4>와 같다. <표 3-4>의 두 번째 열은 전체 비취업자격 이민자의 취업 결정요인 분석 결과이

13) 통계청·법무부의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는 조사연도에 따라 조사 문항에 차이가 있으며, 2017년과 2019년의 자료에는 2018년과 2020년 자료에 포함하는 이민자의 한국어능력과 사회 네트워크, 건강 상태 같은 일부 변수가 조사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7년과 2019년 자료에 포함하는 직업훈련 참여 여부 또한 비취업자격 이민자의 노동시장 성과(취업, 임금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외국인의 직업훈련 참여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내용은 김혜진·이철희(202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며, 세 번째 열과 네 번째 열은 각각 남성 비취업자격 이민자와 여성 비취업자격 이민자의 취업 결정요인 분석 결과이다.

첫째, 비취업자격 이민자의 성별, 연령 같은 개인적 특성이 그들의 취업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성별과 관련해서는 여성 비취업자격 이민자가 남성 비취업자격 이민자보다 취업 상태일 확률이 유의하게 낮았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는 돌봄이 필요한 어린 자녀의 존재나 배우자의 소득 수준 등이 남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므로 여성 비취업자격 이민자가 남성 비취업자격 이민자보다 국내 노동시장에서 취업 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연령의 경우 30~50대의 비취업자격 이민자는 15~29세 비취업자격 이민자보다 취업 확률이 유의하게 높으나 60세 이상 비취업자격 이민자의 경우에는 15~29세 비취업자격 이민자보다 취업 상태일 확률이 유의하게 낮았다. 비취업자격 이민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가 ‘ 좋음 ’ 일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취업 확률이 유의하게 높으며, 한국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비취업자격 이민자보다 한국 거주기간이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인 비취업자격 이민자의 취업 확률이 유의하게 높다. 연령이나 한국 거주기간이 비취업자격 이민자의 취업 확률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은 비취업자격 이민자의 성별을 구분한 결과에서도 대체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비취업자격 이민자의 출신국적과 체류자격이 그들의 취업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비취업자격 이민자의 출신국적이 중국(한국계 외)인 경우보다 다른 국적 출신의 비취업자격 이민자가 노동시장에서 취업 상태에 있을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비취업자격 이민자의 체류자격이 그들의 취업 확률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유학생과 체류자격이 결혼이민, 기타인 외국인과 귀화자의 경우 재외동포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보다 취업 확률이 유의하게 낮으며, 영주자의 경우에는 체류자격이 재외동포인 외국인보다 취업 확률이 높다. 비취업자격 이민자의 체류자격이 취업 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재외동포 대비 영주자의 높은 취업 확률은 남성 비취업자격 외국인에 한정되며, 재외동포 대비 결혼이민자의 낮은 취업 확률은 여성 비취업자격 외국인에 한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비취업자격 이민자의 취업 결정요인: 2020년

변수	전체	남성	여성
성별(여성=1)	-0.583 *** (0.023)		
연령_30대 (ref. 연령_15~29세)	0.298 *** (0.034)	0.352 *** (0.065)	0.242 *** (0.040)
연령_40대	0.410 *** (0.042)	0.331 *** (0.077)	0.401 *** (0.052)
연령_50대	0.254 *** (0.045)	0.049 (0.080)	0.332 *** (0.057)
연령_60세이상	-0.422 *** (0.048)	-0.625 *** (0.082)	-0.371 *** (0.064)
건강상태(좋은=1)	0.248 *** (0.024)	0.460 *** (0.041)	0.149 *** (0.031)
한국거주기간_3~5년미만 (ref. 한국거주기간_3년미만)	0.133 *** (0.039)	0.047 (0.063)	0.217 *** (0.051)
한국거주기간_5~10년미만	0.319 *** (0.038)	0.295 *** (0.065)	0.333 *** (0.048)
한국거주기간_10년이상	0.476 *** (0.042)	0.353 *** (0.069)	0.569 *** (0.054)
교육수준_고졸 (ref. 교육수준_중졸이하)	0.130 *** (0.027)	0.206 *** (0.044)	0.093 *** (0.033)
교육수준_대졸이상	0.097 *** (0.031)	0.198 *** (0.053)	0.035 (0.040)
한국어능력 <sup>1)</sup>	0.028 ** (0.012)	0.018 (0.019)	0.035 ** (0.016)
혼인상태(배우자있음=1)	0.032 (0.030)	0.253 *** (0.054)	-0.100 *** (0.038)
자녀유무(자녀있음=1)	-0.042 (0.033)	0.177 *** (0.058)	-0.212 *** (0.042)
사회네트워크_한국인네트워크만보유 (ref. 사회네트워크_없음)	-0.010 (0.043)	0.135 * (0.071)	-0.081 (0.055)
사회네트워크_모국인네트워크만보유	0.201 *** (0.038)	0.214 *** (0.058)	0.188 *** (0.051)
사회네트워크_다중네트워크	0.105 *** (0.038)	0.172 *** (0.060)	0.064 (0.050)

〈표 3-4〉 비취업자격 이민자의 취업 결정요인: 2020년 (계속)

변수	전체	남성	여성
출신국적_한국계 중국 (ref. 출신국적_중국)	0.332 *** (0.041)	0.428 *** (0.067)	0.250 *** (0.053)
출신국적_베트남	0.432 *** (0.039)	0.422 *** (0.079)	0.447 *** (0.048)
출신국적_기타아시아	0.244 *** (0.038)	0.425 *** (0.065)	0.168 *** (0.048)
출신국적_아시아외	0.374 *** (0.050)	0.426 *** (0.079)	0.258 *** (0.070)
체류자격_유학생 (ref. 체류자격_재외동포)	-0.935 *** (0.056)	-1.207 *** (0.084)	-0.801 *** (0.076)
체류자격_영주자	0.107 ** (0.045)	0.178 ** (0.073)	0.064 (0.060)
체류자격_결혼이민	-0.239 *** (0.044)	-0.042 (0.098)	-0.259 *** (0.057)
체류자격_기타	-0.630 *** (0.044)	-0.535 *** (0.069)	-0.880 *** (0.065)
체류자격_귀화자	-0.053 *** (0.036)	-0.071 (0.056)	-0.031 (0.048)
거주지역_서울 (ref. 거주지역_강원·제주)	-0.108 ** (0.049)	-0.065 (0.089)	-0.159 *** (0.060)
거주지역_인천·경기	-0.045 (0.047)	0.036 (0.086)	-0.097 * (0.056)
거주지역_부산·울산·대구·경남·경북	-0.049 (0.046)	0.047 (0.087)	-0.107 * (0.056)
거주지역_대전·세종·충남·충북	0.021 (0.049)	0.125 (0.090)	-0.030 (0.060)
거주지역_광주·전남·전북	0.036 (0.051)	0.120 (0.096)	0.007 (0.060)
상수항	-0.492 *** (0.089)	-0.989 *** (0.144)	-0.703 *** (0.116)
Log pseudolikelihood	-9,679	-3,329	-6,139
Wald $\chi^2$	3,031 ***	1,546 ***	1,384 ***
Pseudo R <sup>2</sup>	0.156	0.223	0.111
N	16,573	6,537	10,036

주: 1) 한국어능력은 5점 리커트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4개 영역 평균임

2) \*\*\*p<0.01, \*\*p<0.05, \*p<0.1

3) ( )는 강건한 표준오차

자료: MDIS(통계청·법무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2020) (추출·다운로드일자: 2021.09.24.)

셋째, 한국어능력이나 교육수준 같은 비취업자격 이민자의 인적자본이 그들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비취업자격 이민자의 한국어능력은 그들의 취업 확률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런 효과는 여성 비취업자격 이민자에게 한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업 결정요인을 분석한 김새봄·정진화(2016)의 연구에서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어능력이 그들의 취업에서 지닌 내생성을 확인한 바 있으나, 본 연구의 비취업자격 이민자의 취업 결정요인 분석에서는 한국어능력의 내생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비취업자격 이민자의 한국어능력은 비취업자격 이민자가 본인의 한국어능력을 5점 리커트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한 주관적 점수로,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의 문제에서도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조성호·변수정, 2015b) 본 연구의 한국어능력 추정치에 편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비취업자격 이민자의 교육수준이 그들의 취업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중졸 이하의 학력을 보유한 비취업자격 이민자보다 고졸이나 대졸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비취업자격 이민자의 취업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성별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여성 비취업자격 이민자의 대졸 이상의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인 경우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여성 비취업자격 이민자의 교육수준이 국내 노동시장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그들의 취업 직종이나 출신 국가에 따라 상이할 개연성이 존재하므로 여성 비취업자격 이민자가 보유한 교육수준이 국내 노동시장 취업과는 무관하다는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sup>14)</sup>

넷째, 비취업자격 이민자의 혼인 여부와 자녀 유무, 사회 네트워크가 그들의 취업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비취업자격 이민자의 혼인 여부나 자녀 유무가 취업 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그들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남성 비취업자격 이민자가 배우자가 없는 남성 비취업자격 이민자보다 취업 확률이 높고, 자녀의 존재 또한 그들의 취업 확률을 유의하게 높였다. 반면에 여성 비취업자격 이민자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존재나 자녀

14) 국내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업이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양인숙·김선혜, 2011; 강혜정·이규용, 2012; 이태정 외, 2013; 조성호·변수정, 2015a, b; 김새봄·정진화, 2016; 조선주·민현주, 2017)에서도 여성 결혼이민자의 교육수준이 그들의 취업 확률에 미치는 영향이 일관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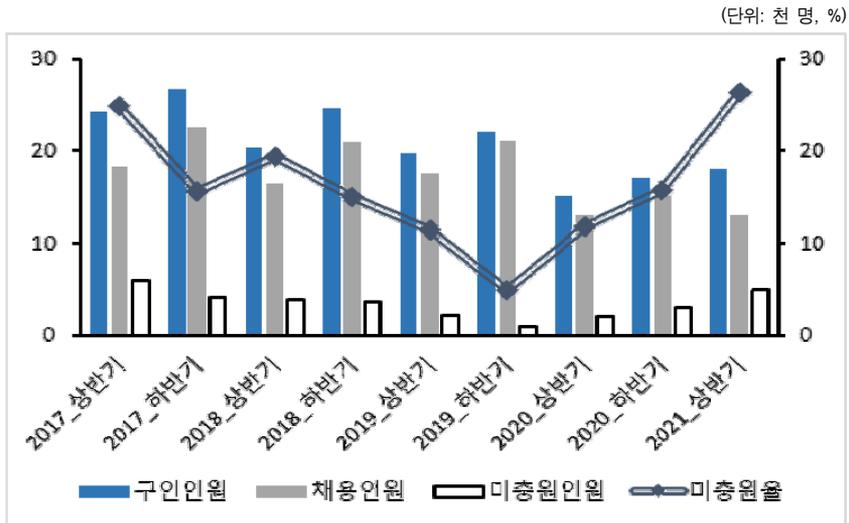
의 존재가 그들의 취업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비취업자격 이민자가 보유한 사회 네트워크가 그들의 취업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모국인 네트워크나 다중 네트워크를 보유한 비취업자격 이민자의 취업 확률이 사회 네트워크를 보유하지 않은 이민자보다 유의하게 높다. 성별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남성 비취업자격 이민자의 경우에는 사회 네트워크를 보유하지 않은 자에 비해 한국인이나 모국인, 다중 네트워크를 보유한 자의 취업 확률이 높았으나, 여성 비취업자격 이민자의 경우에는 모국인 네트워크를 보유한 자만이 사회 네트워크를 보유하지 않은 자보다 취업 상태일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제2절 이민자의 산업 및 직업별 고용구조

국내 노동시장에서 취업 활동 중인 이민자의 산업별, 직업별 분포를 살펴 보기에 앞서 고용노동부의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를 통해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수급 현황을 살펴본다. 2021년 상반기 기준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외국인 구인인원은 1만 8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천 명 증가하였다.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을 위해 대외적인 구인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한 인원을 채용하지 못한 비중을 의미하는 미충원율은 2018년 상반기 19.3%에서 2019년 하반기 4.9%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나, 2019년 12월 발생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미충원율은 2021년 상반기 기준 26.3%까지 상승하였다(그림 3-1 참조).

[그림 3-1] 외국인 구인인원과 채용인원, 미충원율 추이



- 주: 1) 구인인원이란 대외적인 구인활동을 통하여 구인한 인원으로 조사기준일 이전 3개월 사이에 채용한 채용인원을 위해 최초 모집공고 당시에 채용하려고 했던 인원임  
 2) 채용인원이란 조사기준일 이전 3개월 사이에 최종적으로 채용하기로 확정했거나 채용한 인원임  
 3) 미충원율 = [(구인인원 - 채용인원) / 구인인원] × 100

자료: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 2017년 하반기, pp. 2-3; 2018년 하반기, pp. 3-4; 2019년 하반기 pp. 3-4; 2021년 상반기, pp. 3-4.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외국인 인구의 국내 유입 감소로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을 희망하는 다수의 사업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외국인 인구의 유입 제한이 2020년 2월 이후 본격화되었다는 점과 통계청·법무부의 「2020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의 조사 기준시점이 2020년 5월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정적이긴 하나 2019년과 2020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전후 외국인 취업자의 산업별, 직업별 고용구조 변화를 일정 부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sup>15)</sup> 그러나 코로나19의 발생 시점과 「2020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의 조사 기준시점 사이의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짧고, 코로나19의 확산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국인 취업자의 산업별, 직업별 고용구조 변화를 2019~2020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온전히 관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내 거주 이민자의 경제활동이나 이민자의 산업별, 직업별 고용구조 변화에 관한 분석은 추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 1. 산업별 고용구조

국내 노동시장에서 취업 활동 중인 이민자의 상당수는 광·제조업 종사자이다. 2020년 5월 기준 전체 이민 배경 취업자의 44.6%가 광·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도소매·음식·숙박(19.7%),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6.8%) 순으로 비중이 높다. 이는 일반고용허가제 도입 쿼터의 70% 이상이 제조업에 할당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국 국적의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과 귀화자 모두 광·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귀화자는 외국인보다 도소매·음식·숙박업에 종사하고 있는 비중이 30% 내외로 높다(〈표 3-5〉 참조).

15) 김세봄(2021)은 2019년과 2020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를 사용하여 코로나 19 확산 전후 외국인 노동시장의 변화를 살펴본 바 있다.

〈표 3-5〉 산업별 이민 배경 취업자 현황

(단위: 천 명,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체	868.0 (100.0)	918.8 (100.0)	894.8 (100.0)	876.7 (100.0)
농림어업	50.0 (5.8)	50.6 (5.5)	53.1 (5.9)	58.0 (6.6)
광·제조업	396.6 (45.7)	417.7 (45.5)	411.0 (45.9)	390.6 (44.6)
건설업	92.5 (10.7)	113.4 (12.3)	97.5 (10.9)	87.7 (10.0)
도소매·음식·숙박	165.0 (19.0)	173.6 (18.9)	174.2 (19.5)	172.8 (19.7)
전기·운수·통신·금융	10.2 (1.2)	15.0 (1.6)	14.9 (1.7)	20.2 (2.3)
사업·개인·공공서비스	153.7 (17.7)	148.4 (16.2)	144.1 (16.1)	147.4 (16.8)
외국인	834.2 (100.0)	884.3 (100.0)	863.2 (100.0)	847.9 (100.0)
농림어업	48.3 (5.8)	49.5 (5.6)	52.1 (6.0)	56.9 (6.7)
광·제조업	383.5 (46.0)	404.9 (45.8)	399.4 (46.3)	379.6 (44.8)
건설업	90.3 (10.8)	110.7 (12.5)	95.0 (11.0)	85.5 (10.1)
도소매·음식·숙박	154.7 (18.5)	163.2 (18.5)	164.5 (19.1)	164.4 (19.4)
전기·운수·통신·금융	9.5 (1.1)	14.2 (1.6)	14.0 (1.6)	19.2 (2.3)
사업·개인·공공서비스	147.7 (17.7)	141.8 (16.0)	138.3 (16.0)	142.3 (16.8)
귀화자 <sup>1)</sup>	33.8 (100.0)	34.6 (100.0)	31.6 (100.0)	28.7 (100.0)
농림어업	1.6 (4.7)	1.1 (3.2)	1.0 (3.2)	1.1 (3.8)
광·제조업	13.0 (38.5)	12.8 (37.0)	11.7 (37.0)	11.0 (38.3)
건설업	2.2 (6.5)	2.8 (8.1)	2.6 (8.2)	2.2 (7.7)
도소매·음식·숙박	10.3 (30.5)	10.5 (30.3)	9.7 (30.7)	8.4 (29.3)
전기·운수·통신·금융	0.7 (2.1)	0.8 (2.3)	0.8 (2.5)	1.0 (3.5)
사업·개인·공공서비스	6.0 (17.8)	6.6 (19.1)	5.8 (18.4)	5.1 (17.8)

주: 1) 귀화자는 조사연도 기준 최근 5년 이내 귀화 허가를 받은 자만 포함

2) ( )는 비중임

자료: KOSIS(통계청·법무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각 연도)

산업별 이민 배경 취업자의 규모 변화를 <표 3-5>를 통해 살펴보면, 농림어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은 2017년 이후 이민 배경 취업자 규모가 비교적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광·제조업이나 건설업은 2018년 이후 이민 배경 취업자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제조업과 건설업의 경우에는 2019년 대비 2020년에 이민 배경 취업자의 규

모가 각각 2만 명과 1만 명 감소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크게 제한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출신국적과 체류자격별 이민 배경 취업자의 종사 산업 분포를 <표 3-6>에서 살펴보면, 아시아 이외 국가 출신 이민 배경 취업자는 아시아 국가 출신 이민 배경 취업자와 비교할 때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52.4%로 높으며, 광·제조업 종사자 비중은 24.9%에 그쳤다. 아시아 국가 출신 이민 배경 취업자의 종사 산업에서 광·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들의 출신국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계 중국 출신은 건설업이나 도소매·음식·숙박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베트남이나 기타 아시아 국가 출신보다 상대적으로 높는데, 이는 방문취업 자격의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특례고용허가제가 취업 허용업종으로 일반고용허가제에서 허용하는 취업 업종 이외에 다수의 서비스업을 포함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체류자격별 이민 배경 취업자의 종사 산업별 비중과 관련해서는 고용허가제의 영향을 받는 비전문취업 자격과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의 경우에는 광·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각각 79.8%와 28.2%로 높고, 전문인력 관련 체류자격 소지자의 경우에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55.9%에 달한다. 취업 관련 체류자격 이외의 자격을 소지한 비취업자격 이민 배경 취업자의 종사 산업을 살펴보면, 영주자나 재외동포, 결혼이민자, 귀화자의 경우 광·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비중이 30% 이상으로 높긴 하나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 비중도 23.7~29.1%에 달한다. 반면 국내 노동시장에서 취업 활동 중인 유학생의 대다수는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이며 광·제조업 종사자 비중은 2.6%로 낮다(<표 3-6> 참조).

〈표 3-6〉 산업별 이민 배경 취업자 현황: 출신국적 및 체류자격별, 2020년

(단위: %)

구분	농림 어업	광·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 숙박	전기· 운수· 통신· 금융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	전체
출신국적							
중국(한국계)	0.8	29.3	20.9	28.2	2.1	18.7	100.0
중국(한국계 외)	3.8	21.4	8.6	41.8	3.6	20.8	100.0
베트남	17.6	52.4	1.6	23.0	1.2	4.2	100.0
기타 아시아 <sup>2)</sup>	11.4	66.6	3.2	8.5	1.7	8.7	100.0
아시아 외 <sup>3)</sup>	0.6	24.9	3.1	12.9	6.1	52.4	100.0
체류자격							
비전문취업	13.9	79.8	3.2	1.8	0.2	1.1	100.0
방문취업	0.9	28.2	29.0	26.5	0.4	14.9	100.0
전문인력	0.1	18.4	1.0	22.1	2.5	55.9	100.0
유학생	0.5	2.6	0.2	71.7	4.5	20.5	100.0
재외동포	0.8	35.2	10.9	23.7	3.8	25.5	100.0
영주자	0.7	31.0	16.2	28.4	3.7	20.1	100.0
결혼이민	4.3	38.8	6.9	27.5	2.2	20.3	100.0
기타	23.6	25.8	5.0	18.9	5.7	20.9	100.0
귀화자 <sup>1)</sup>	3.8	38.3	7.8	29.1	3.3	17.7	100.0

주: 1) 귀화자는 조사연도 기준 5년 이내 귀화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하며, 귀화자의 출신국적은 귀화 이전 국적에 해당

2) 중국(한국계 포함), 베트남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 포함

3) 아시아 국가 이외의 모든 국가 포함

4) 가중치를 사용하여 계산

자료: MOIS(통계청·법무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2020) (추출·다운로드일자: 2021.09.24.)

이어서 인적 특성별 이민 배경 취업자의 종사 산업별 비중을 <표 3-7>에서 살펴보면, 남성은 광·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가장 높고 건설업(14.2%),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2.8%), 도소매·음식·숙박업(10.7%) 순으로 비중이 높다. 여성 이민 배경 취업자 또한 상당수가 광·제조업이나 도소매·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 비중이 37.4%에 달한다. 그와 더불어 여성 이민 배

경 취업자는 남성 이민 배경 취업자에 비해 건설업 종사자 비중은 1.7%로 낮고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은 24.6%로 높다.

국내 노동시장에서 취업 활동 중인 연령대별 이민자의 종사 산업 비중을 살펴보면, 이민 배경 취업자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광·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낮는데 이는 일반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 노동시장으로 유입되는 대다수 외국인 근로자의 연령이 50세 미만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sup>16)</sup> 60세 이상 이민 배경 취업자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비중이 42.6%로 다른 연령대의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종사자 비중과 비교할 때 크게 높고, 광·제조업 종사자 비중은 14.5%에 그쳤다(〈표 3-7〉 참조).

교육수준과 관계없이 국내 노동시장에서 취업 활동 중인 이민자의 상당수가 광·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수준이 중졸 미만인 이민 배경 취업자와 대졸 이상인 이민 배경 취업자의 종사 산업별 비중은 다소 차이가 있다. 중졸 미만에 해당하는 교육수준을 보유한 이민 배경 취업자와 대졸 이상의 교육수준을 보유한 이민 배경 취업자 모두 광·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하긴 하나, 교육수준이 중졸 미만인 이민 배경 취업자는 대졸 이상의 교육수준을 보유한 이민 배경 취업자와 비교할 때 농림어업 종사자 비중이 12.4%로 높다. 반면 대졸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수준을 보유한 이민 배경 취업자는 다른 교육수준별 이민 배경 취업자와 비교할 때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이나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교육수준이 대졸 이상인 이민 배경 취업자의 27.6%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종사자이며 농림어업 종사자 비중은 2.5%에 불과하다(〈표 3-7〉 참조).

16)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선발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과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해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의 응시 자격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필리핀의 경우 만 18세 이상 38세 이하)로 제한된다(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 [eps.go.kr](http://eps.go.kr), 검색일: 2021.12.01.).

〈표 3-7〉 산업별 이민 배경 취업자 현황: 인적 특성별, 2020년

(단위: %)

구분	농림 어업	광·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 숙·박	전·기· 운·수· 통·신· 금·용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	전체
성별							
남성	7.5	52.6	14.2	10.7	2.2	12.8	100.0
여성	5.0	28.8	1.7	37.4	2.4	24.6	100.0
연령대							
15~29세	12.2	53.5	3.0	17.0	2.8	11.6	100.0
30~39세	7.2	55.6	6.5	15.0	2.8	13.0	100.0
40~49세	3.7	41.9	14.9	20.7	2.4	16.4	100.0
50~59세	1.9	24.9	19.2	31.9	1.1	20.9	100.0
60세 이상	2.5	14.5	18.1	21.4	1.0	42.6	100.0
교육수준							
중졸 미만	12.4	36.4	14.8	18.2	0.6	17.5	100.0
중졸	10.0	43.8	13.5	19.6	0.9	12.1	100.0
고졸	6.9	47.9	11.1	21.4	1.5	11.1	100.0
대졸 이상 <sup>2)</sup>	2.5	42.5	5.0	17.7	4.7	27.6	100.0

주: 1) 조사연도 기준 최근 5년 이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와 외국인을 모두 포함하며, 가중치를 사용하여 계산함

2) 대졸 이상은 전문대졸 포함

자료: MDS(통계청·법무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2020) (추출·다운로드일자: 2021.09.24.)

## 2. 직업별 고용구조

국내 노동시장에서 취업 활동 중인 이민자 중 상당수는 기능·기계·조작·조립 종사자나 단순노무종사자이다. 2020년 5월 기준 전체 이민 배경 취업자의 37.5%는 기능·기계·조작·조립 종사자이며, 단순노무종사자(31.7%), 서비스·판매종사자(14.6%) 순으로 비중이 높다. 한국 국적 취득 여부에 따른 이민 배경 취업자의 종사 직업을 살펴보면, 취업 활동 중인 귀화자의 25.4%는 서비스·판매종사자로 외국인 취업자에서 서비스·판매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인 14.2%보다 크게 높다. 반면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취업자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외국인의 경우가 9.2%로 귀화자의 5.2%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8> 참조).

직업별 이민 배경 취업자의 규모 변화를 <표 3-8>에서 살펴보면,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나 사무종사자 규모는 2017년 이후 비교적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른 직업과 비교할 때 기능·기계·조작·조립 종사자 규모는 2019년보다 2020년에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앞서 <표 3-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규모가 코로나19 확산으로 2019년보다 2020년에 감소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출신국적별, 체류자격별 이민 배경 취업자의 종사 직업 분포를 <표 3-9>에서 살펴보면, 아시아 이외 국가 출신은 아시아 국가 출신과 비교할 때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3.8%로 높다. 아시아 국가 출신이더라도 이민 배경 취업자의 세부 출신국적에 따라 그들의 종사 직업 비중에는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계 중국 출신은 기능·기계·조작·조립 종사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7.1%로 가장 높고, 중국(한국계 외) 출신의 경우에는 서비스·판매종사자의 비중이 36.1%로 가장 높다. 베트남 출신 이민 배경 취업자 또한 기능·기계·조작·조립 종사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로 높긴 하나, 중국(한국계, 한국계 외) 출신 이민 배경 취업자와 비교할 때 농림어업숙련종사자 비중이 8.9%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체류자격별 이민 배경 취업자의 종사 직업 비중과 관련해서는 고용허가제 취업 허용업종의 영향을 받는 비전문취업 자격과 방문취업 자격을 소지한 취업자의 대다수는 기능·기계·조작·조립 종사자나 단순노무종사자이다. 전문인력 관련 자격을 소지한 이민 배경 취업자의 63.3%는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이며, 기능·기계·조작·조립 종사자나 단순노무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9.3%와 5.4%에 그쳤다. 취업 관련 자격 이외의 자격을 소지한 이민 배경 취업자의 종사 직업 비중을 살펴보면, 국내 노동시장에서 취업 활동 중인 유학생의 43.5%는 서비스·판매종사자이며, 영주나 결혼이민 자격의 외국인과 귀화자의 80% 이상은 서비스·판매종사자나 기능·기계·조작·조립 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이다(<표 3-9> 참조).

〈표 3-8〉 직업별 이민 배경 취업자 현황

(단위: 천 명,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체	868.0 (100.0)	918.8 (100.0)	894.8 (100.0)	876.7 (100.0)
관리자·전문가및관련종사자	76.2 (8.8)	72.9 (7.9)	75.9 (8.5)	79.4 (9.1)
사무종사자	21.3 (2.5)	27.9 (3.0)	25.6 (2.9)	31.7 (3.6)
서비스·판매종사자	120.4 (13.9)	136.1 (14.8)	124.7 (13.9)	127.9 (14.6)
농림·어업숙련종사자	20.9 (2.4)	22.6 (2.5)	24.5 (2.7)	31.3 (3.6)
기능·기계·조작·조립	342.2 (39.4)	343.2 (37.4)	357.4 (39.9)	328.5 (37.5)
단순노무종사자	287.0 (33.1)	316.1 (34.4)	286.6 (32.0)	277.9 (31.7)
외국인	834.2 (100.0)	884.3 (100.0)	863.2 (100.0)	847.9 (100.0)
관리자·전문가및관련종사자	74.0 (8.9)	70.5 (8.0)	74.0 (8.6)	77.9 (9.2)
사무종사자	19.9 (2.4)	26.1 (3.0)	24.2 (2.8)	30.1 (3.5)
서비스·판매종사자	111.4 (13.4)	127.0 (14.4)	116.6 (13.5)	120.7 (14.2)
농림·어업숙련종사자	20.2 (2.4)	21.9 (2.5)	23.7 (2.7)	30.6 (3.6)
기능·기계·조작·조립	332.2 (39.8)	334.5 (37.8)	348.0 (40.3)	320.3 (37.8)
단순노무종사자	276.4 (33.1)	304.3 (34.4)	276.7 (32.1)	268.4 (31.7)
귀화자 <sup>1)</sup>	33.8 (100.0)	34.6 (100.0)	31.6 (100.0)	28.7 (100.0)
관리자·전문가및관련종사자	2.2 (6.5)	2.3 (6.6)	1.8 (5.7)	1.5 (5.2)
사무종사자	1.4 (4.1)	1.8 (5.2)	1.5 (4.7)	1.6 (5.6)
서비스·판매종사자	9.0 (26.6)	9.1 (26.3)	8.1 (25.6)	7.3 (25.4)
농림·어업숙련종사자	0.6 (1.8)	0.8 (2.3)	0.8 (2.5)	0.7 (2.4)
기능·기계·조작·조립	10.0 (29.6)	8.8 (25.4)	9.4 (29.7)	8.2 (28.6)
단순노무종사자	10.6 (31.4)	11.8 (34.1)	9.9 (31.3)	9.5 (33.1)

주: 1) 귀화자는 조사연도 기준 최근 5년 이내 귀화허가를 받은 자만 포함함

2) ( )는 비중임

자료: KOSIS(통계청·법무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각 연도)

〈표 3-9〉 직업별 이민 배경 취업자 현황: 출신국적 및 체류자격별, 2020년

(단위: %)

구분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판매종사자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기능· 기계·조작· 조립	단순노무 종사자
출신국적						
중국(한국계)	2.3	3.5	22.6	0.5	37.1	34.0
중국(한국계 외)	12.6	8.3	36.1	2.3	18.8	22.0
베트남	3.5	1.2	13.3	8.9	35.0	38.1
기타 아시아 <sup>2)</sup>	5.4	2.1	5.4	6.2	47.1	33.8
아시아 외 <sup>3)</sup>	53.8	9.9	7.5	0.3	15.7	12.8
체류자격						
비전문취업	0.0	0.1	0.04	7.4	56.3	36.1
방문취업	0.1	0.4	15.9	0.5	39.8	43.3
전문인력	63.3	4.2	17.5	0.4	9.3	5.4
유학생	17.2	4.1	43.5	0.2	1.7	33.4
재외동포	11.2	6.5	20.9	0.5	33.8	27.1
영주자	9.0	5.6	24.9	0.3	35.5	24.8
결혼이민	11.9	3.7	20.8	2.1	27.3	34.2
기타	16.4	9.8	11.5	13.0	20.5	28.8
귀화자 <sup>1)</sup>	5.4	5.6	25.2	2.3	28.5	33.0

주: 1) 귀화자는 조사연도 기준 5년 이내 귀화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하며, 귀화자의 출신국적은 귀화 이전 국적에 해당함

2) 중국(한국계 포함), 베트남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 포함

3) 아시아 국가 이외의 모든 국가 포함

4) 가중치를 사용하여 계산

자료: MDS(통계청·법무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2020) (추출·다운로드일자: 2021.09.24.)

국내 노동시장에서 취업 활동 중인 인적 특성별 이민자의 종사 직업 비중을 <표 3-10>에서 살펴보면, 남성은 기능·기계·조작·조립 종사자와 단순노무종사자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여성 이민 배경 취업자도 절반 이상이 기능·기계·조작·조립 종사자와 단순노무종사자이나, 서비스·판매종사자 비중도 29.3%에 달한다. 연령대별 이민 배경 취업자의 종사 비중의 경우 15-29세, 30대, 40대 연령층에서는 기능·기계·조립·종사자 비중이 높고, 50대와 60세 이상에서는 단순노무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교육수준별 이민 배경 취업자의 종사 직업 비중과 관련해서는 중졸 미만, 중졸, 고졸에 해당하는 교육수준을 보유한 이민 배경 취업자의 경우 전체에서 기능·기계·조립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으로 높으나, 대졸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이민 배경 취업자에서는 기능·기계·조립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8.7%에 그쳤다. 또한 대졸 이상의 교육수준을 보유한 이민 배경 취업자에서 단순노무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6%에 그쳐 중졸 미만이나 중졸, 고졸에 해당하는 교육수준을 보유한 이민 배경 취업자의 단순노무종사자 비중(34.3~45.2%)과 차이를 보였다(<표 3-10> 참조).

<표 3-10> 직업별 이민 배경 취업자 현황: 인적 특성별, 2020년

(단위: %)

구분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판매종사자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기능· 기계·조작· 조립	단순노무 종사자
성별						
남성	7.8	2.6	7.1	4.3	48.8	29.5
여성	11.6	5.7	29.3	2.2	15.2	36.1
연령대						
15~29세	9.7	3.4	11.0	6.3	37.3	32.4
30~39세	10.5	4.9	11.0	4.2	41.6	27.7
40~49세	9.2	3.2	16.0	1.9	40.8	29.0
50~59세	6.2	2.4	22.2	0.9	31.4	37.0
60세 이상	6.3	2.1	22.7	1.5	25.3	42.1
교육수준						
중졸 미만	0.4	0.6	14.4	5.3	34.1	45.2
중졸	0.1	0.5	14.4	5.4	41.7	37.9
고졸	1.2	2.3	15.9	4.0	42.4	34.3
대졸 이상 <sup>1)</sup>	28.2	8.3	12.8	1.4	28.7	20.6

주: 1) 조사연도 기준 최근 5년 이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와 외국인을 모두 포함하며, 가중치를 사용하여 계산함

2) 대졸 이상은 전문대졸 포함

자료: MDIS(통계청·법무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2020) (추출·다운로드일자: 2021.09.24.)

### 3. 이민 배경 취업자의 종사상지위와 종사 사업체 규모

이어서 <표 3-11>과 <표 3-12>에서 이민 배경 취업자의 종사상지위와 근무지역, 이민 배경 취업자가 종사 중인 사업체의 규모를 살펴본다. 다음의 <표 3-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20년 5월 기준 국내 노동시장에서 취업 활동 중인 이민자의 대다수는 임금근로자이며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5.5%에 그쳤다. 이민 배경 임금근로자 중 63.8%는 상용근로자이며,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 비중은 각각 19.9%와 16.3%이다.

산업별 이민 배경 취업자의 종사상지위와 관련해서는 광·제조업이나 건설업 종사자의 경우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2% 미만으로 매우 낮고, 농림어업종사자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종사자도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10% 미만에 그쳤다. 이처럼 대다수 광·제조업 종사자나 농림어업종사자가 임금근로자인 원인은 광·제조업이나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중 상당수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 노동시장으로 유입되었을 개연성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나 전기·운수·통신·금융업 종사자에서 비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4.6%와 13.8%에 달한다(<표 3-11> 참조).

직업별 이민 배경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를 살펴보면, 서비스·판매종사자의 경우 비임금근로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5%로 높아 다른 직업과 차이를 보인다. 또한 서비스·판매종사자는 단순노무종사자를 제외한 다른 직업과 비교할 때 임금근로자에서 일용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3.3%로 높다. 또한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이민자 대다수가 임금근로자이긴 하나 이들의 53.7%만 상용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금 근로 상태에 있는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나 사무종사자,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기계·조작·조립 종사자의 상용근로 비중과 큰 차이를 보인다(<표 3-11> 참조).

〈표 3-11〉 산업 및 직업별 이민 배경 취업자의 종사상지위: 2020년

(단위: %)

구분	임금근로자 <sup>1)</sup>				비임금근로자 <sup>2)</sup>
	소계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전체	94.5	63.8	19.9	16.3	5.5
산업별					
농림어업	94.0	74.5	17.9	7.6	6.0
광·제조업	99.5	83.5	13.2	3.3	0.5
건설업	98.5	21.2	19.4	59.4	1.5
도소매·음식·숙박	85.4	46.6	31.6	21.7	14.6
전기·운수·통신·금융	86.2	66.6	25.1	8.3	13.8
사업·개인·공공서비스	90.7	48.2	27.1	24.7	9.3
직업별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87.7	79.9	19.6	0.5	12.3
사무종사자	87.8	80.9	18.8	0.3	12.2
서비스·판매종사자	80.5	43.7	32.9	23.3	19.5
농림·어업숙련종사자	92.8	81.0	14.6	4.4	7.2
기능·기계·조작·조립	99.2	72.2	14.9	12.9	0.8
단순노무종사자	98.2	53.7	21.7	24.6	1.8

주: 1)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비중은 임금근로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고용원 있음과 고용원 없음)와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3) 가중치를 사용하여 계산

자료: MDIS(통계청·법무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2020) (추출·다운로드일자: 2021.09.24.)

산업별, 직업별 이민 배경 취업자가 종사 중인 사업체의 규모를 <표 3-12>에서 살펴보면, 2020년 5월 기준 전체 이민 배경 취업자의 약 70%가 30인 미만의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으며 300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비중은 3.2%에 그쳤다. 특히 농림어업종사자와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의 70% 이상이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허가제 업종별 쿼터 중 가장 큰 쿼터를 차지하는 광·제조업 분야에 종사 중인 이민자의 37.3%는 10~29인 규모의 사업체에 종사 중이며, 50~299인 규모의 사업체에 종사 중인 비중도 25.8%에 달한다.

직업별 이민 배경 취업자의 종사 사업체 규모와 관련해서는 관리자·전문

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를 제외한 모든 직업군에서 300인 이상의 사업체에 종사하는 이민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 미만에 불과하다. 특히 농림·어업숙련종사자와 서비스·판매종사자의 40% 이상은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체에 종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3-12〉 참조).

〈표 3-12〉 산업 및 직업별 이민 배경 취업자의 종사 사업체 규모: 2020년

(단위: %)

구분	4인 이하	5~9인	10~29인	30~49인	50~299인	300인 이상
전체	23.1	18.1	28.1	9.9	17.6	3.2
산업별						
농림어업	41.8	35.4	16.0	3.5	3.3	0.0
광·제조업	4.8	13.9	37.3	16.2	25.8	2.0
건설업	18.3	21.9	34.7	6.4	15.4	3.3
도소매·음식·숙박	54.3	24.3	13.6	2.1	4.2	1.5
전기·운수·통신·금융	22.5	14.7	20.6	7.3	21.1	13.8
사업·개인·공공서비스	30.4	13.3	22.6	7.2	18.3	8.2
직업별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8.7	10.9	21.7	7.6	23.4	17.7
사무종사자	26.9	16.8	16.8	5.9	20.8	12.8
서비스·판매종사자	54.2	20.4	12.9	3.0	8.3	1.2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6.0	32.8	16.2	2.8	2.2	0.0
기능·기계·조작·조립	8.0	14.9	37.4	14.6	23.1	1.9
단순노무종사자	24.8	21.3	28.6	9.4	15.2	0.8

주: 가중치를 사용하여 계산

자료: MDIS(통계청·법무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2020) (추출·다운로드일자: 2021.09.24.)

산업별 이민 배경 취업자의 근무지역 분포를 〈표 3-13〉에서 살펴보면, 전체 이민 배경 취업자의 60.9%가 수도권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세부 산업별 이민 배경 취업자의 근무지역을 살펴보면, 대다수 농림어업종사자의 근무지역은 비수도권이며 광·제조업(45.7%),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9.7%), 도소매·음식·숙박업(27.2%) 종사자 순으로 근무지역이 비수도권인 비중이 높다.

〈표 3-13〉 산업별 이민 배경 취업자의 근무지역<sup>1)</sup>: 2020년

(단위: %)

구분		전체	농림 어업	광·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 숙박	전기· 운수· 통신· 금융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
수도권 <sup>2)</sup>	소계	60.9	12.6	54.3	77.9	72.8	82.1	70.3
	서울	28.9	1.8	4.7	31.6	51.0	64.7	45.9
	인천	9.0	3.0	11.7	8.4	6.8	6.1	7.4
	경기	62.1	95.2	83.6	60.0	42.3	29.1	46.6
비수도권 <sup>2)</sup>	소계	39.1	87.4	45.7	22.1	27.2	17.9	29.7
	경북·경남	43.4	35.9	48.1	31.9	38.8	55.4	42.4
	충북·충남	31.2	22.2	35.0	37.2	23.9	21.2	31.7
	전북·전남	17.2	27.0	14.4	20.0	18.5	15.4	14.7
	강원·제주	8.2	14.9	2.5	10.9	18.9	8.1	11.2

주: 1) 인천 이외의 광역시는 각 도, 세종특별자치시는 충남·충북에 포함되며 가중치를 사용하여 계산함

2) 서울, 인천, 경기도는 수도권 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며, 경북·경남, 충북·충남, 전북·전남, 강원·제주는 비수도권 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MDIS(통계청·법무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2020) (추출·다운로드일자: 2021.09.24.)

산업별 이민 배경 취업자의 세부 지역별 분포를 <표 3-13>에서 살펴보면, 비수도권에서 농림어업에 종사 중인 이민자의 35.9%가 경북·경남 지역에서 근무 중이며 전북·전남(27%), 충북·충남(22.2%) 순으로 비중이 높다. 이어서 광·제조업에 종사 중인 이민자의 54.3%가 수도권에서 근무 중인 가운데 이들의 80% 이상은 경기도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에서 광·제조업에 종사 중인 이민자의 80% 정도는 경북·경남이나 충북·충남에서 근무 중이며, 강원·제주에서 근무 중인 비중은 2.5%에 그쳤다.

농림어업과 광·제조업을 제외한 다른 산업에 종사 중인 이민자의 70% 이상은 수도권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수도권에서 전기·운수·통신·금융업에 종사 중인 이민자의 60% 이상은 세부 근무지역이 서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비수도권에서 농림어업이나 도소매·음식·숙박업에 종사 중인 이민자의 세부 근무지역이 강원·제주인 비중은 각각 14.9%와 18.9%에 달하나, 농림어업이나 도소매·음식·숙박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 중인 이민자의 세부 근무지역이 강원·제주인 비중은 2.5~11.2%에 그쳤다(<표 3-13> 참조).

## 제4장

## 이민자의 이직 경험과 임금 분포

## 제1절 이민자의 이직과 근속

국내 노동시장에서 취업 활동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최근 1년 이내 이직 경험과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신청 현황과 사유를 살펴보기에 앞서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과 관련한 법적인 사항을 간략히 살펴본다.

일반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 노동시장에서 취업 활동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변경 사유와 횟수에 제한이 있다.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입국 후 허용된 취업 활동기간인 3년 내 최대 3회까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으며, 재고용을 통해 취업 활동기간이 연장된 자의 경우에는 연장 기간 2년 중 최대 2회까지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여기서 휴업, 폐업에 따른 고용 허가 취소 등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한 경우는 사업장 변경 가능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외국인 고용법)」 제25조, 검색일: 2021.12.04.).<sup>17)</sup>

〈표 4-1〉은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국내 노동시장에서 취업 활동 중인 이

민자의 최근 1년 이내 직장 변경 경험과 사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2020년 5월 기준 전체 이민 배경 근로자의 14.2%가 지난 1년 사이 직장을 변경한 경험이 있었으며, 이들 대다수가 지난 1년간 직장을 변경한 횟수는 1회에 그쳤다. 또한 최근 1년 이내 직장을 변경한 경험이 있는 이민 배경 근로자의 절반 정도는 사업장 변경 이전의 직장과 다른 업종으로 직장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최근 1년 이내 직장을 변경한 이민 배경 근로자의 직장 변경 사유를 살펴보면, 2020년 5월 기준 ‘근로조건 불만족’이 27.3%로 가장 큰 비중

17)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검색일: 2021.12.04.)을 살펴보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외국인 고용법)」 제25조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제19조 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제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신청을 한 후 재취업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제18조에 따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30조 ① 법 제25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검색일: 2021.12.04.).

을 차지하며 그다음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 또한 24.7%로 비중이 높다. 특히 직장 변경 사유가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 이었던 비중은 2017~2019년과 비교할 때 다소 상승하였는데, 이는 2019년 12월 발생한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가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어서 국내 노동시장에서 취업 활동 중인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신청 현황을 <표 4-2>에서 살펴보면, 2020년 기준 4만 1,550건의 사업장 변경신청이 발생하였다.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신청 사유의 대부분은 계약기간 만료나 당사자 간의 자율 합의, 근로자의 태업 또는 무단결근, 기타 근로자 귀책을 포함하는 제25조 1항 1호에 해당한다. 특히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자율 합의가 2020년 기준 사업장 변경신청 사유 중 7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표적 집단 면접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의 자율 합의에 따른 사업장 변경신청 사유가 실제보다 더 많이 집계되었을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제25조 1항 1호에 해당하는 사유 외에 다른 사유의 사업장 변경신청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해고가 9.9%를, 폐업이나 도산 등 사업 종료에 따른 경우가 5.2%를 차지한다.

〈표 4-1〉 이민 배경 근로자의 최근 1년 이내 직장 변경 경험과 사유

(단위: 천 명,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체	868.0 (100.0)	918.8 (100.0)	894.8 (100.0)	876.7 (100.0)
변경 경험 없음	706.0 (81.3)	768.4 (83.6)	754.5 (84.3)	752.5 (85.8)
변경 경험 있음	162.0 (18.7)	150.4 (16.4)	140.3 (15.7)	124.1 (14.2)
변경 횟수				
1회	135.0 (83.3)	131.9 (87.7)	118.8 (84.7)	109.5 (88.2)
2회	14.9 (9.2)	10.3 (6.8)	9.4 (6.7)	8.8 (7.1)
3회 이상	12.2 (7.5)	8.2 (5.5)	12.1 (8.6)	5.8 (4.7)
변경 업종				
동일 업종	73.8 (45.6)	66.9 (44.5)	65.2 (46.5)	61.4 (49.5)
다른 업종	88.3 (54.5)	83.5 (55.5)	75.1 (53.5)	62.7 (50.5)
변경 사유				
근로조건 불만족	52.9 (32.7)	48.1 (32.0)	43.6 (31.1)	33.9 (27.3)
개인사유	37.1 (22.9)	39.7 (26.4)	31.3 (22.3)	25.3 (20.4)
직장 휴폐업	9.1 (5.6)	8.9 (5.9)	7.9 (5.6)	7.2 (5.8)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22.4 (13.8)	16.7 (11.1)	16.3 (11.6)	16.0 (12.9)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	26.9 (16.6)	24.6 (16.4)	27.9 (19.9)	30.7 (24.7)
기타	13.7 (8.5)	12.4 (8.2)	13.3 (9.5)	11.1 (8.9)

주: 1)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를 모두 포함

2) ( )는 비중임

자료: KOSIS(통계청·법무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각 연도)

〈표 4-2〉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신청 현황: 2020년

(단위: 건, %)

구분		건	(비중)
변경신청 건수		41,550	(100.0)
변경 사유			
제25조 1항 1호	계약기간 만료	704	(1.7)
	당사자 간 자율 합의	30,250	(72.8)
	근로자 대입	726	(1.7)
	근로자 무단결근	689	(1.7)
	기타 근로자 귀책	1,924	(4.6)
제25조 1항 2호	휴업, 휴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감소 <sup>1)</sup>	440	(1.1)
	폐업, 도산 등 사실상 사업 종료	2,180	(5.2)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 등 <sup>2)</sup>	4,120	(9.9)
	사업주 미인도	10	(0.02)
	사용자가 고용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	28	(0.1)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장 외 근로로 인한 고용제한	51	(0.1)
	임금체불 등 그 외 <sup>3)</sup>	354	(0.9)
제25조 5항	상해 등	18	(0.04)
이탈(법무부 자진신고)		5	(0.01)

주: 1) 장기간 휴업, 휴직을 포함

2)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를 포함

3) 임금 또는 근로시간을 20% 이상 감축, 외국인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대 변경, 폭행, 상습적 폭언, 불합리한 차별 등의 사유 포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EIS) 외국인통계

〈표 4-3〉은 2020년 5월 기준 특성별 이민 배경 근로자의 최근 1년 이내 직장 변경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2020년 5월 기준 최근 1년 이내 직장을 변경한 경험이 있는 비중은 이민 배경 근로자의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대별 이민 배경 근로자의 직장 변경 경험과 관련해서는 40대와 5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최근 1년 사이 직장을 변경한 경험이 있는 비중이 약간 높았다. 이민 배경 근로자의 교육수준에 따라 최근 1년 사이 직장을 변경한 경험이 있는 비중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다른 국적 출신에 비해 한국계 중국 출신의 이민 배경 근로자가 최근 1년 사이 직장을 변경한

비중이 18%로 높았다.

체류자격별 이민 배경 근로자의 최근 1년 이내 직장 변경 경험을 살펴보면, 방문취업이나 유학생 자격의 외국인 근로자가 다른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나 귀화자보다 상대적으로 최근 1년 사이 직장을 변경한 비중이 20% 내외로 높았다. 전문인력 관련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3.5%만 최근 1년 사이 직장을 변경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이 있는 비전문취업 자격의 외국인 근로자도 최근 1년 사이 직장을 변경한 경험이 있는 비중이 9.6%에 그쳤다(〈표 4-3〉 참조).

2020년 5월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사이 직장을 변경한 경험이 있는 이민 배경 근로자는 대체로 이전에 종사하던 산업과 동일한 산업의 사업체로 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에서 음영 표시된 부분은 2020년 5월 기준 최근 1년 사이 직장을 변경한 경험이 있는 이민 배경 근로자에서 이직 이전에 종사하던 산업과 동일한 산업의 사업체로 이직한 이민 배경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2020년 5월 기준 최근 1년 사이 직장을 변경한 경험이 있는 이민 배경 근로자의 산업 변화를 살펴보면,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이나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 종사하던 이민 배경 근로자의 경우 농림어업이나 광·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에 종사하던 이민 배경 근로자와 비교할 때 다른 산업의 사업체로 이직한 비중이 각각 59.3%와 47%로 높았다. 직장을 변경하기 이전에 전기·운수·통신·금융업에 종사 중이었던 이민 배경 근로자의 36.2%는 도소매·음식·숙박업으로 직장을 옮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장을 변경하기 이전에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 종사하던 이민 배경 근로자의 18.4%는 도소매·음식·숙박업으로, 16.5%는 광·제조업으로 직장을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특성별 이민 배경 근로자의 최근 1년 이내 직장 변경 경험: 2020년

(단위: %)

구분	변경 경험 있음	변경 경험 없음	전체
전체	14.2	85.8	100.0
성별			
남성	13.3	86.7	100.0
여성	15.9	84.1	100.0
연령대			
15~29세	13.8	86.2	100.0
30~39세	12.5	87.5	100.0
40~49세	16.5	83.5	100.0
50~59세	16.6	83.4	100.0
60세 이상	11.9	88.1	100.0
교육수준			
중졸 미만	13.2	86.8	100.0
중졸	14.6	85.5	100.0
고졸	15.2	84.8	100.0
대졸 이상	12.7	87.3	100.0
출신국적 <sup>1)</sup>			
중국(한국계)	18.0	82.0	100.0
중국(한국계 외)	13.6	86.4	100.0
베트남	13.9	86.2	100.0
기타 아시아	11.3	88.7	100.0
아시아 외	10.3	89.7	100.0
체류자격			
비전문취업	9.6	90.4	100.0
방문취업	20.9	79.1	100.0
전문인력	3.5	96.5	100.0
유학생	19.0	81.0	100.0
재외동포	15.7	84.3	100.0
영주자	17.4	82.6	100.0
결혼이민	16.9	83.1	100.0
기타	11.7	88.3	100.0
귀화자 <sup>2)</sup>	15.6	84.4	100.0

주: 1) 귀화자는 조사연도 기준 최근 5년 이내 귀화 허가를 받은 자만 포함하며, 귀화자의 출신국적은 귀화 이전의 국적에 해당함

2) 가중치를 사용하여 계산함

자료: MDIS(통계청·법무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2020) (추출·다운로드일자: 2021.09.24.)

〈표 4-4〉 최근 1년간 이직 경험이 있는 이민 배경 근로자의 종사 산업 이동: 2020년  
(단위: 천 명, %)

구분	이전 직장							
	농림 어업	광·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 숙박	전기· 운수· 통신· 금융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	인원	
현재 직장	농림 어업	89.2	0.8	0.2	0.3	0.0	1.3	8
	광· 제조업	6.2	81.0	11.9	10.9	12.1	16.5	47
	건설업	1.7	3.5	72.8	2.8	0.0	6.8	17
	도소매· 음식· 숙박	1.9	8.1	4.2	76.7	36.2	18.4	33
	전기· 운수· 통신· 금융	0.0	0.9	2.5	1.0	40.7	4.0	3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	1.0	5.7	8.4	8.3	11.0	53.0	16
	인원	8	47	18	31	2	18	124

주: 1) 최근 1년간 이직 경험이 있는 이민자의 종사 산업 이동은 현재 직장/이전 직장×100으로 계산함

2) 가중치를 사용하여 계산함

자료: MDIS(통계청·법무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2020) (추출·다운로드일자: 2021.09.24.)

이어서 2020년 5월 기준 최근 1년 사이 직장을 변경한 경험이 있는 특성 별 이민 배경 근로자의 동일 업종으로 이직한 비중을 <표 4-5>에서 살펴본다. 2020년 5월 기준 최근 1년 사이 직장을 변경한 경험이 있는 이민 배경 근로자의 성별에 따른 구분 없이 남성이나 여성 이민 배경 근로자의 절반 정도가 직장 변경 이전에 종사하던 사업체와는 다른 업종으로 직장을 옮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사이 직장을 변경한 경험이 있는 연령대별 이민 배경 근로

자의 동일 업종으로 이직한 비중을 살펴보면, 40대까지는 직장 변경 이전에 종사하던 사업체와 다른 업종으로 직장을 옮긴 비중이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50대와 60세 이상에서는 다른 업종으로 이직한 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미치지 못했다.

2020년 5월 기준 최근 1년 사이 직장을 변경한 경험이 있는 교육수준별 이민 배경 근로자의 동일 업종 이직 여부를 살펴보면, 고졸이나 대졸 이상의 교육수준을 보유한 이민 배경 근로자가 교육수준이 중졸 이하인 이민 배경 근로자보다 다른 업종으로 직장을 옮긴 비중이 높았다. 출신국적별 이민 배경 근로자의 동일 업종 이직 여부와 관련해서는 중국(한국계 포함)이나 베트남을 제외한 다른 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기타 아시아 국가 출신 이민 배경 근로자의 경우 다른 업종으로 직장을 옮긴 비중이 60%에 달했다. 또한 아시아 국가 이외의 국가를 포함하는 아시아 외 국가 출신 이민 배경 근로자의 절반 정도가 이직 이전에 종사하던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5〉 참조).

체류자격별 이민 배경 근로자의 동일 업종 이직 여부와 관련해서는 전문 인력 관련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는 다른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나 귀화자와 비교할 때 다른 업종으로 직장을 옮긴 비중이 7%로 크게 낮으며, 유학생도 다른 업종으로 업장을 옮긴 비중이 25.9%에 그쳤다. 이외는 대조적으로 2020년 5월 기준 최근 1년 사이 직장을 변경한 경험이 있는 비전문 취업이나 재외동포, 결혼이민 자격 소지 외국인 근로자와 귀화자의 절반 이상은 이직 이전에 종사하던 업종과는 다른 업종으로 직장을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표 4-5〉 참조).

〈표 4-5〉 최근 1년간 이직 경험이 있는 이민 배경 근로자의 동일 업종 이직 여부: 2020년  
(단위: %)

구분	동일 업종	다른 업종	전체
전체	49.5	50.5	100.0
성별			
남성	48.6	51.5	100.0
여성	51.0	49.0	100.0
연령대			
15~29세	45.4	54.6	100.0
30~39세	44.8	55.2	100.0
40~49세	45.4	54.6	100.0
50~59세	64.8	35.2	100.0
60세 이상	54.4	45.6	100.0
교육수준			
중졸 미만	58.3	41.7	100.0
중졸	58.7	41.3	100.0
고졸	46.2	53.8	100.0
대졸 이상	46.0	54.0	100.0
출신국적 <sup>1)</sup>			
중국(한국계)	53.3	46.7	100.0
중국(한국계 외)	54.0	46.0	100.0
베트남	55.7	44.3	100.0
기타 아시아	40.0	60.0	100.0
아시아 외	49.5	50.5	100.0
체류자격			
비전문취업	41.6	58.4	100.0
방문취업	55.2	44.8	100.0
전문인력	93.0	7.0	100.0
유학생	74.1	25.9	100.0
재외동포	45.1	54.9	100.0
영주자	54.0	46.0	100.0
결혼이민	41.1	59.0	100.0
기타	59.2	40.8	100.0
귀화자 <sup>1)</sup>	39.3	60.7	100.0

주: 1) 귀화자는 조사연도 기준 최근 5년 이내 귀화 허가를 받은 자만 포함하며, 귀화자의 출신국적은 귀화 이전의 국적에 해당함

2) 가중치를 사용하여 계산함

자료: MDS(통계청·법무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2020) (추출·다운로드일자: 2021.09.24.)

국내 노동시장에서 취업 활동 중인 이민자의 동일 직업 근무 기간은 이들의 해당 직업과 관련한 숙련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다. <표 4-6>에서 2020년 5월 기준 국내 노동시장에서 취업 활동 중인 이민자의 동일 직업 근무 기간을 살펴보면, 전체 이민 배경 근로자의 49.4%가 3년 이상 동일 직업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 직업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비중은 9%에 그쳤다.

성별 이민 배경 근로자의 동일 직업 근무 기간과 관련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현 직업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비중이 12.8%로 높긴 하나 3년 이상인 비중도 47.6%로 절반에 가깝다. 연령대별 이민 배경 근로자의 동일 직업 근무 기간과 관련해서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노동시장에 진입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15~29세의 이민 배경 근로자의 경우에는 현 직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비중이 24.2%에 그쳤으며, 이민 배경 근로자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현 직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6> 참조).

이민 배경 근로자의 동일 직업 근무 기간은 교육수준에 따라 큰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한국계 중국 출신이 다른 국적 출신의 이민 배경 근로자보다 현 직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비중이 62.7%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자격별 이민 배경 근로자의 동일 직업 근무 기간 현황을 살펴보면, 유학생의 경우에는 다른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나 귀화자보다 현 직업에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비중이 5.5%로 매우 낮다. 비전문취업이나 전문인력, 유학생, 기타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나 귀화자의 절반 이상이 현 직업 근무 기간이 3년 이상이며, 특히 영주자의 경우에는 현 직업 근무 기간이 3년 이상인 비중이 73.4%에 달한다(<표 4-6> 참조).

〈표 4-6〉 이민 배경 근로자의 동일 직업 근무 기간: 2020년

(단위: %)

구분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년 이상	전체
전체	9.0	10.3	17.9	13.4	49.4	100.0
성별						
남성	7.0	10.2	18.3	14.1	50.3	100.0
여성	12.8	10.7	17.0	12.0	47.6	100.0
연령대						
15~29세	12.6	19.0	26.9	17.4	24.2	100.0
30~39세	8.0	8.8	18.6	14.1	50.4	100.0
40~49세	8.6	7.5	13.7	11.6	58.5	100.0
50~59세	6.4	5.4	10.3	10.2	67.7	100.0
60세 이상	7.7	5.3	10.6	8.2	68.3	100.0
교육수준						
중졸 미만	8.8	7.8	16.3	14.3	52.8	100.0
중졸	8.0	8.9	16.6	13.5	52.9	100.0
고졸	9.3	10.9	17.8	13.6	48.4	100.0
대졸 이상	9.2	11.0	19.3	12.8	47.8	100.0
출신국적 <sup>1)</sup>						
중국(한국계)	8.3	6.3	12.7	10.0	62.7	100.0
중국(한국계외)	12.0	10.2	19.1	11.8	47.0	100.0
베트남	15.6	12.7	21.8	14.4	35.6	100.0
기타 아시아	7.1	13.4	21.5	17.3	40.8	100.0
아시아 외	9.8	12.0	19.5	12.1	46.6	100.0
체류자격별						
비전문취업	4.5	12.9	23.6	18.4	40.6	100.0
방문취업	11.3	9.0	17.1	11.0	51.7	100.0
전문인력	4.7	16.9	22.6	10.8	45.0	100.0
유학생	38.0	21.6	22.4	12.5	5.5	100.0
재외동포	8.9	6.7	14.5	11.7	58.2	100.0
영주자	7.3	4.3	8.1	6.9	73.4	100.0
결혼이민	13.1	7.9	13.3	12.6	53.2	100.0
기타	10.2	16.2	20.7	14.9	38.1	100.0
귀화자 <sup>1)</sup>	11.5	8.1	14.8	12.7	53.0	100.0

주: 1) 귀화자는 조사연도 기준 최근 5년 이내 귀화 허가를 받은 자만 포함하며, 귀화자의 출신국적은 귀화 이전의 국적에 해당함

2) 가중치를 사용하여 계산함

자료: MDS(통계청·법무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2020) (추출·다운로드일자: 2021.09.24.)

## 제2절 이민자의 월평균임금 수준과 결정요인

본 절에서는 통계청·법무부의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를 활용하여 국내 노동시장에서 임금 근로 중인 이민자의 월평균임금 수준과 비취업 자격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노동시장에서 취업 활동 중인 이민자의 월평균임금과 주당 취업 시간을 구간형으로 제공하는 자료의 제약 때문에 국내 노동시장에서 임금 근로 중인 이민자나 비취업자격 이민자의 월평균임금에 관한 분석 시 취업 시간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국내 노동시장에서 임금 근로 중인 이민자의 월평균임금에 관한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국내 노동시장에서 취업 활동(또는 임금 근로) 중인 이민자의 취업 시간과 월평균임금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포함하는 자료의 구축 및 제공이 필요하다. 국내 노동시장에서 임금 근로 중인 이민자의 시간당 임금 등에 관한 엄밀한 분석은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 1. 이민 배경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sup>18)</sup> 수준

통계청·법무부(KOSIS, 2021)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국내 노동시장에서 임금 근로 중인 이민자의 절반 정도가 월평균임금 수준이 200만~3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00만~200만 원 미만(28.3%), 300만 원 이상(16.2%) 순으로 비중이 높다. 이민 배경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 수준 분포를 2020년과 2017년을 비교해 보면,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월평균임금이 200만 원 미만인 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43.6%에서 2020년 33.2%로 10%p 정도 감소하였으며 월평균임금 수준이 200만~300만 원 미만과 300만 원 이상인 임금근로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보다 2020년에 각각 4.4%, 6%p 증가하였다(<표 4-7> 참조).

<표 4-7>에서 살펴보면 2020년 5월 기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임금근로자(귀화자)는 월평균임금 수준이 200만 원 미만인 임금근로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임금근로자보다 높다. 이는 상

18) 월평균 임금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1개월 평균(월평균) 임금 또는 보수(세금 공제 전)에 해당한다.

용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외국인 임금근로자(64.1%)보다 귀화자가 54.4%로 낮기 때문에 판단된다. 그와 더불어 주당 취업 시간이 40시간 미만인 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16%에 그쳤으나 임금 근로 중인 귀화자의 경우에는 23.8%에 달한다(통계청·법무부, 2021).

<표 4-7> 이민 배경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 수준

(단위: 천 명,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체	828.1 (100.0)	875.7 (100.0)	852.4 (100.0)	828.3 (100.0)
100만 원 미만	35.6 (4.3)	36.3 (4.1)	45.5 (5.3)	40.7 (4.9)
100만~200만 원 미만	325.8 (39.3)	303.6 (34.7)	238.1 (27.9)	234.8 (28.3)
200만~300만 원 미만	381.9 (46.1)	426.1 (48.7)	431.6 (50.6)	418.5 (50.5)
300만 원 이상	84.8 (10.2)	109.7 (12.5)	137.3 (16.1)	134.3 (16.2)
외국인	799.0 (100.0)	845.8 (100.0)	825.4 (100.0)	803.7 (100.0)
100만 원 미만	32.0 (4.0)	32.3 (3.8)	42.4 (5.1)	38.2 (4.8)
100만~200만 원 미만	309.2 (38.7)	288.2 (34.1)	224.7 (27.2)	223.1 (27.8)
200만~300만 원 미만	375.1 (46.9)	418.3 (49.5)	423.8 (51.3)	410.8 (51.1)
300만 원 이상	82.8 (10.4)	107.1 (12.7)	134.4 (16.3)	131.7 (16.4)
귀화자 <sup>1)</sup>	29.1 (100.0)	29.9 (100.0)	27.0 (100.0)	24.6 (100.0)
100만 원 미만	3.7 (12.7)	4.0 (13.4)	3.0 (11.1)	2.5 (10.2)
100만~200만 원 미만	16.6 (57.0)	15.5 (51.8)	13.4 (49.6)	11.8 (48.0)
200만~300만 원 미만	6.8 (23.4)	7.8 (26.1)	7.8 (28.9)	7.7 (31.3)
300만 원 이상	2.0 (6.9)	2.6 (8.7)	2.8 (10.4)	2.7 (11.0)

주: 1) 귀화자는 조사연도 기준 최근 5년 이내 귀화 허가를 받은 자만 포함

2) ( )안은 비중임

자료: KOSIS(통계청·법무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각 연도)

이어서 2020년 5월 기준 국내 노동시장에서 임금 근로 중인 이민자의 월평균임금 수준을 <표 4-8>와 <표 4-9>에서 살펴본다. 이민 배경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 수준은 그들의 종사 산업이나 직종, 종사상지위, 주당 취업 시간 등에 기인하므로, 성별이나 교육수준 등 특성별 이민 배경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 수준의 직접적인 비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표 4-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당 취업 시간이 40시간 이상(40-50시간

미만이나 50~60시간 미만, 60시간 이상)인 이민 배경 임금근로자 중 월평균임금 수준이 200만 원 이상인 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인 반면에 주당 취업 시간이 40시간 미만(20시간 미만, 20~30시간 미만, 30~40시간 미만)인 이민 배경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월평균임금 수준이 200만 원 이상인 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주당 취업 시간이 20시간 미만인 이민 배경 임금근로자의 49.3%가 월평균임금 수준이 1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주당 취업 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이민 배경 임금근로자 중에서 월평균임금 수준이 100만 원 미만인 자가 차지하는 비중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어서 특성별 이민 배경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 수준을 살펴보면, 이민 배경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 수준은 성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남성 이민 배경 임금근로자의 경우 월평균임금 수준이 200만 원 이상인 비중이 75.8%에 달하나 여성 이민자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표 4-8〉 참조). 이는 이민 배경 임금근로자의 성별에 따라 국내 노동시장에서 종사 중인 산업이나 직종, 종사상지위, 주당 취업 시간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종사상지위나 주당 취업 시간과 관련하여 남성 이민 배경 임금근로자는 여성 이민 배경 임금근로자보다 상용근로자 비중(남성 이민자 69.4%, 여성 이민자 52.3%)과 주당 취업 시간이 40시간 이상인 비중(남성 이민자 86.4%, 여성 이민자 71.6%)이 모두 높다(통계청·법무부, 2021).

이민 배경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 수준을 연령대와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월평균임금 수준이 300만 원 이상인 비중은 40대에서 24.9%로 가장 높으며 15~29세나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월평균임금 수준이 300만 원 이상인 비중이 각각 7.6%와 12.4%에 그쳤다(〈표 4-8〉 참조). 이처럼 15~29세와 60세 이상 이민 배경 임금근로자 중에서 월평균임금 수준이 300만 원 이상인 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연령대보다 낮은 원인에는 종사 산업, 직업 등의 차이도 있으나, 30대(10.9%)나 40대(15%)의 이민 배경 임금근로자보다 주당 취업 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비중이 각각 18.4%와 24.6%로 다소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통계청·법무부, 2021). 교육수준과 관련해서는 이민 배경 임금근로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월평균임금 수준이 200만 원 이상인 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월평균임금 수준이 200만 원 미만인 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졸 이상의 교육수준을 보유한 이민자에서는 26.4%에 그쳤으나, 중졸 미만의 교육수준을 보유한 이민자의 경우에는 비중이 4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8〉 참조).

〈표 4-8〉 특성별 이민 배경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 수준: 2020년

(단위: %)

구분	100만 원 미만	100만~200만 원 미만	200만~30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	전체
전체	4.9	28.4	50.5	16.2	100.0
성별					
남성	2.2	22.1	54.6	21.2	100.0
여성	10.6	41.2	42.2	6.1	100.0
연령대					
15~29세	8.6	33.4	50.4	7.6	100.0
30~39세	2.2	25.4	53.8	18.7	100.0
40~49세	3.2	23.8	48.1	24.9	100.0
50~59세	5.3	27.9	49.1	17.6	100.0
60세 이상	7.3	35.2	45.1	12.4	100.0
교육수준					
중졸 미만	4.3	38.4	49.1	8.2	100.0
중졸	3.5	32.2	50.6	13.8	100.0
고졸	6.2	28.8	51.5	13.5	100.0
대졸 이상	4.1	22.3	49.4	24.2	100.0
이직 경험 유무					
있음	6.6	29.2	49.4	14.8	100.0
없음	4.6	28.2	50.7	16.5	100.0
동일직업근무기간					
6개월 미만	17.6	37.0	37.7	7.7	100.0
6개월~1년 미만	7.4	38.4	43.6	10.6	100.0
1~2년 미만	4.8	31.1	52.5	11.6	100.0
2~3년 미만	3.9	31.8	53.0	11.3	100.0
3년 이상	2.3	22.6	53.0	22.1	100.0
주당취업시간					
20시간 미만	49.3	31.1	13.7	5.9	100.0
20~30시간 미만	32.0	44.0	17.7	6.3	100.0
30~40시간 미만	7.0	51.9	29.9	11.2	100.0
40~50시간 미만	0.5	28.3	53.3	18.0	100.0
50~60시간 미만	0.4	17.5	64.1	18.0	100.0
60시간 이상	1.3	18.0	62.8	17.9	100.0

주: 가중치를 사용하여 계산함

자료: MDS(통계청·법무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2020) (추출·다운로드일자: 2021.09.24.)

그와 더불어 이민 배경 임금근로자의 2020년 5월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이직 경험과 동일 직업 근무기간에 따른 월평균임금 수준을 살펴보면, 이민 배경 임금근로자의 이직 경험에 따라 그들의 월평균임금 수준 분포에는 큰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반면에 동일 직업 근무기간과 관련해서는 이민 배경 임금근로자가 동일 직업에 근무한 기간이 길수록 대체로 월평균임금 수준이 200만 원 이상인 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임금 수준이 200만 원 이상인 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동일 직업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이민 배경 근로자에서는 75.1%에 달하나, 동일 직업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이민자 중에서는 비중이 45.4%에 그쳤다(〈표 4-8〉 참조).

이어서 산업 및 직종별 이민 배경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 분포를 〈표 4-9〉를 통해 살펴보면, 건설업이나 전기·운수·통신·금융업 종사자의 경우 월평균임금이 300만 원 이상인 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으로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이민 배경 임금근로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과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을 제외한 다른 산업별 이민 배경 임금근로자의 상당수가 월평균임금 수준이 100만~3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농업·림업에 종사하는 이민 배경 임금근로자에서 월평균임금 수준이 100만~300만 원 미만인 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90% 이상으로 매우 높다.

직업별 이민 배경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 수준과 관련해서는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경우 월평균임금 수준이 300만 원 이상인 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46.1%에 달하며, 사무종사자에서도 월평균임금 수준이 300만 원 이상인 자의 비중이 34%를 차지한다. 서비스·판매종사자는 다른 직업의 이민 배경 임금근로자와 비교할 때 월평균임금 수준이 100만 원 미만인 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2.3%로 다소 높다(〈표 4-9〉 참조). 이는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제외한 다른 직업별 이민 배경 임금근로자의 경우 주당 취업 시간이 40시간 미만인 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미만인 반면에 서비스·판매종사자의 경우에는 주당 취업 시간이 40시간 미만인 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6.1%로 다소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통계청·법무부, 2021).

〈표 4-9〉 산업 및 직업별 이민 배경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 수준: 2020년

(단위: %)

구분	100만 원 미만	100만~200만 원 미만	200만~30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	전체
전체	4.9	28.4	50.5	16.2	100.0
산업별					
농림어업	2.3	62.4	34.6	0.7	100.0
광·제조업	1.2	24.2	60.4	14.2	100.0
건설업	1.5	15.7	43.7	39.2	100.0
도소매·음식·숙박	14.0	33.0	44.8	8.2	100.0
전기·운수·통신·금융	10.1	18.6	33.4	37.9	100.0
사업·개인·공공서비스	8.3	30.9	41.2	19.6	100.0
직업별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6.1	16.3	31.5	46.1	100.0
사무종사자	5.2	14.5	46.3	34.0	100.0
서비스·판매종사자	12.3	31.4	48.8	7.5	100.0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3	60.5	37.2	1.0	100.0
기능·기계·조작·조립	0.7	20.8	58.6	20.0	100.0
단순노무종사자	7.2	37.3	48.3	7.2	100.0
사업체 규모					
4인 이하	12.9	41.4	38.1	7.6	100.0
5-9인	6.2	33.7	48.7	11.5	100.0
10-29인	2.4	26.4	56.0	15.2	100.0
30-49인	1.5	21.6	58.4	18.6	100.0
50-299인	1.8	19.8	56.0	22.5	100.0
300인 이상	3.2	10.7	27.8	58.3	100.0

주: 기중치를 사용하여 계산함

자료: MDS(통계청·법무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2020) (추출·다운로드일자: 2021.09.24.)

〈표 4-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민 배경 임금근로자 중 월평균임금 수준이 300만 원 이상인 비중은 그들이 근무 중인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이민 배경 임금근로자의 58.3%가 월평균임금 수준이 3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4인 이하

사업체에 종사하는 이민 배경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월평균임금 수준이 300만 원 이상인 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7.6%에 그쳤다. 이는 이민 배경 임금근로자가 근무 중인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해당 사업체의 산업이나 이민 배경 임금근로자의 주당 취업 시간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사업체 규모별 이민 배경 임금근로자의 주당 취업 시간과 관련하여, 4인 이하 사업체에서 근무 중인 이민 배경 임금근로자의 경우 주당 취업 시간이 40시간 미만인 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3.5%로 다른 규모별 사업체에서 근무 중인 이민 배경 임금근로자(5-9인: 17.6%, 10-29인: 11.1%, 30-49인: 8.3%, 50-299인: 9.2%, 300인 이상: 19.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법무부, 2021).

## 2. 비취업자격 이민자의 임금 결정요인

이어서 통계청·법무부의 「2020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국내 노동시장에서 임금 근로 중인 비취업자격 이민자의 월평균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국내 노동시장에서 임금 근로 중인 비취업자격 이민자의 월평균임금 수준 결정요인 분석에는 종속변수인 최근 3개월의 월평균임금 변수(200만 원 미만, 200만~300만 원, 300만 원 이상)가 순서가 있는 범주형 변수라는 점과 임금 결정요인 분석 시 국내 노동시장에서 임금 근로 중인 비취업자격 이민자만을 선택할 때 발생하는 선택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헤크만-순위프로빗 모형(ordered probit model with sample selection)을 사용하였다.

국내 노동시장에서 임금 근로 중인 비취업자격 이민자의 월평균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4-10>과 같다. <표 4-10>의 두 번째 열은 전체 비취업자격 이민 배경 임금근로자의 임금 결정요인 분석결과이며, 세 번째와 네 번째 열은 각각 남성 비취업자격 이민 배경 임금근로자, 여성 비취업자격 이민 배경 임금근로자의 임금 결정요인 분석 결과이다. 전체 비취업자격 이민자와 성별 비취업자격 이민자의 임금 결정요인 분석의 1단계에 해당하는 임금 근로 결정요인 분석 결과는 <부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3장에서 분석한 비취업자격 이민자의 취업 결정요인 분석 결과와 유사하다.

비취업자격 이민 배경 임금근로자(이하 비취업자격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결정요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비취업자격 임금근로자의 성별, 연령대 같은 개인적 특성은 월평균임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비취업자격 임금근로자의 성별이 여성일 경우 남성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을 확률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내 노동시장에서 취업 활동 중인 이민 배경 임금근로자의 성별에 따라 그들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이나 직종, 취업 시간 등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비취업자격 임금근로자의 연령대와 관련해서는 연령이 15~29세인 비취업자격 임금근로자보다 30대와 40대, 50대 연령대의 비취업자격 임금근로자는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을 확률이 유의하게 높으나, 60세 이상 비취업자격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15~29세 비취업자격 이민자에 비해 낮은 수준의 월평균 임금을 얻을 확률이 높았다. 이러한 비취업자격 임금근로자의 연령이 그들의 월평균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비취업자격 임금근로자의 성별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대체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취업자격 임금근로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가 ‘ 좋음 ’ 일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 수준의 월평균 임금을 받을 확률이 높으나, 비취업자격 임금근로자의 성별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그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국내 노동시장에서 임금 근로 중인 비취업자격 이민자의 한국 거주기간이 그들의 월평균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한국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비취업자격 임금근로자보다 5~10년 미만이나 10년 이상인 비취업자격 임금근로자가 더 높은 수준의 월평균임금을 받을 확률이 유의하게 높다. 비취업자격 임금근로자를 성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한국 거주기간이 월평균임금에 미치는 정(+)의 영향이 남성 비취업자격 임금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비취업자격 임금근로자의 경우 한국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비취업자격 임금근로자보다 3~5년 미만이나 10년 이상인 비취업자격 임금근로자가 높은 수준의 월평균임금을 받을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반면 여성 비취업자격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한국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비취업자격 임금근로자보다 3~5년 미만인 비취업자격 임금근로자가 더 낮은 수준의 월평균임금을 받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 비취업자격 임금근로자의 종사 산업, 직업이나 여성 비취업자격 이민자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혼인 여부, 자

녀 여부 등이 이들의 한국 거주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개연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판단되며 이를 고려한 분석은 추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둘째, 비취업자격 임금근로자의 출신국적과 체류자격이 그들의 월평균임금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출신국적이 중국(한국계 외)인 경우보다 한국계 중국 출신과 아시아 국가 이외의 국가 출신 비취업자격 임금근로자가 더 높은 수준의 월평균임금을 받을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베트남이나 기타 아시아 국가 출신 비취업자격 임금근로자는 중국(한국계 외) 출신 비취업자격 임금근로자에 비해 낮은 수준의 월평균임금을 받을 확률이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비취업자격 임금근로자의 출신국적에 따라 그들이 국내 노동시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산업이나 주당 근로시간 등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취업자격 임금근로자의 체류자격과 관련해서는 유학생이 재외동포 자격 소지자보다 낮은 수준의 월평균 임금을 얻을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유학생 중 상당수가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비취업자격 임금근로자의 체류자격이 월평균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그들의 성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남성 비취업자격 임금근로자는 유학생을 제외한 다른 체류자격의 외국인과 귀화자가 재외동포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월평균임금을 받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 비취업자격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영주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이나 귀화자가 재외동포 자격 소지자보다 더 낮은 수준의 월평균임금을 받을 확률이 높고, 기타 자격의 외국인은 재외동포 자격 소지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월평균임금을 받을 확률이 높았다. 이처럼 비취업자격 임금근로자의 체류자격이 월평균임금 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이 성별로 차이가 있는 원인은 동일한 체류자격을 소지한 비취업자격 임금근로자이더라도 그들의 성별에 따라 종사 산업이나 직업, 주당 근로시간 등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국내에 거주 중인 성별 비취업자격 임금근로자의 종사 산업이나 직업, 주당 근로시간 같은 고용구조 차이에 관한 자세한 분석은 추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표 4-10〉 비취업자격 이민자의 월평균임금 결정요인: 2020년

변수	전체	남성	여성
성별(여성=1)	-1.043 *** (0.039)		
연령대_30대 (ref. 연령대_15~29세)	0.192 *** (0.049)	0.111 (0.081)	0.048 (0.066)
연령대_40대	0.263 *** (0.056)	0.174 ** (0.083)	0.079 (0.081)
연령대_50대	0.181 *** (0.058)	0.124 (0.081)	0.074 (0.086)
연령대_60대	-0.289 *** (0.076)	-0.148 (0.090)	0.079 (0.118)
건강상태(좋은=1)	0.081 ** (0.037)	-0.020 (0.051)	-0.020 (0.047)
한국거주기간_3~5년 미만 (ref. 한국거주기간_3년 미만)	0.056 (0.067)	0.176 ** (0.083)	-0.215 ** (0.105)
한국거주기간_5~10년 미만	0.121 * (0.067)	0.105 (0.083)	-0.111 (0.103)
한국거주기간_10년 이상	0.216 *** (0.071)	0.243 *** (0.087)	-0.119 (0.112)
교육수준_고졸 (ref. 교육수준_중졸 이하)	0.038 (0.036)	0.015 (0.048)	-0.042 (0.051)
교육수준_대졸 이상	0.174 *** (0.044)	0.205 *** (0.060)	0.069 (0.066)
한국어능력 <sup>1)</sup>	0.078 *** (0.017)	0.090 *** (0.021)	0.075 *** (0.025)
출신국적_한국계중국 (ref. 출신국적_중국)	0.179 *** (0.065)	-0.015 (0.088)	-0.089 (0.083)
출신국적_베트남	-0.284 *** (0.082)	-0.084 (0.129)	-0.557 *** (0.087)
출신국적_기타 아시아	-0.269 *** (0.065)	-0.236 *** (0.087)	-0.441 *** (0.080)
출신국적_아시아 외	0.205 *** (0.075)	0.036 (0.099)	0.058 (0.109)

&lt;표 4-10&gt; 비취업자격 이민자의 월평균임금 결정요인: 2020년 (계속)

변수	전체	남성	여성
체류자격_유학생 (ref. 체류자격_재외동포)	-1.684 *** (0.147)	-1.258 *** (0.264)	-1.034 *** (0.252)
체류자격_영주자	0.076 (0.049)	0.220 *** (0.066)	-0.202 *** (0.076)
체류자격_결혼이민	0.037 (0.070)	0.185 ** (0.088)	-0.040 (0.098)
체류자격_기타	0.137 (0.099)	0.424 *** (0.078)	0.346 ** (0.160)
체류자격_귀화자	-0.032 (0.045)	0.257 *** (0.054)	-0.221 *** (0.073)
동일직업근무기간_1~3년 미만 (ref. 동일직업근무기간_1년 미만)	0.086 * (0.044)	0.094 (0.062)	0.061 (0.060)
동일직업근무기간_3년 이상	0.362 *** (0.044)	0.327 *** (0.061)	0.318 *** (0.061)
종사상지위(상용근로=1)	0.325 *** (0.032)	0.229 *** (0.044)	0.401 *** (0.049)
직업_관리자·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ref. 직업_서비스·판매종사자)	0.402 *** (0.067)	0.713 *** (0.094)	0.157 * (0.091)
직업_사무종사자	0.330 *** (0.070)	0.402 *** (0.103)	0.308 *** (0.092)
직업_농림·어업숙련종사자	-0.613 *** (0.127)	-0.553 *** (0.139)	-0.318 (0.446)
직업_기능·기계·조작·조립종사자	0.035 (0.046)	0.156 ** (0.069)	-0.107 * (0.065)
직업_단순노무종사자	-0.328 *** (0.046)	-0.310 *** (0.076)	-0.298 *** (0.057)
사업체 규모_10~30인 미만 (ref. 사업체 규모_10인 미만)	0.162 *** (0.037)	0.196 *** (0.051)	0.130 ** (0.055)
사업체 규모_30~50인 미만	0.224 *** (0.052)	0.265 *** (0.070)	0.173 ** (0.080)
사업체 규모_50인 이상	0.424 *** (0.039)	0.333 *** (0.056)	0.499 *** (0.060)

〈표 4-10〉 비취업자격 이민자의 월평균임금 결정요인: 2020년 (계속)

변수	전체	남성	여성
거주지역_서울 (ref. 거주지역_강원·제주)	0.382 *** (0.074)	0.375 *** (0.104)	0.322 *** (0.101)
거주지역_인천·경기	0.403 *** (0.069)	0.373 *** (0.104)	0.339 *** (0.095)
거주지역_부산·울산·대구·경남·경북	0.125 * (0.071)	0.111 (0.105)	0.098 (0.097)
거주지역_대전·세종·충남·충북	0.282 *** (0.074)	0.190 * (0.108)	0.267 *** (0.102)
거주지역_광주·전남·전북	0.051 (0.079)	0.062 (0.116)	-0.068 (0.106)
cut1	0.869 *** (0.181)	0.397 (0.278)	0.461 (0.318)
cut2	2.428 *** (0.154)	1.833 *** (0.329)	2.123 *** (0.389)
athrho	0.306 * (0.178)	-0.672 *** (0.183)	-0.367 * (0.207)
rho	0.297 * (0.162)	-0.586 *** (0.120)	-0.351 * (0.181)
Log likelihood	-15,992	-6,931	-8,775
Wald $\chi^2$	3,287 ***	618 ***	710 ***
LR test of rho=0	2.78 *	9.75 ***	2.90 *
Select	7,633	3,689	3,944
Non selected	8,940	2,848	6,092
N	16,573	6,537	10,036

주: 1) 한국어능력은 5점 리커트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4개 영역 평균임

2) \*\*\* $p < 0.01$ , \*\* $p < 0.05$ , \* $p < 0.1$

3) ( )안은 표준오차

자료: MDIS(통계청·법무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2020) (추출·다운로드일자: 2021.09.24.)

셋째, 국내 노동시장에서 임금근로 중인 비취업자격 이민자의 인적자본이 그들의 월평균임금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중졸 이하인 비취업자격 임금근로자보다 교육수준이 대졸 이상인 비취업자격 임금근로자가

높은 수준의 월평균임금을 받을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민자의 교육수준이 임금을 증가시키는 데 미친 영향은 2012~2015년 「외국인고용조사」를 사용하여 국내 노동시장에서 취업 활동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결정요인을 분석한 문영만(2016)의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비취업자격 임금근로자가 보유한 대졸 이상의 교육수준이 그들의 월평균임금 수준에 미치는 정(+)의 영향은 성별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남성 비취업자격 임금근로자에게 한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가족부·통계청의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여성 결혼이민자의 임금 결정요인을 분석한 양인숙·김선혜(2011)와 조성호·변수정(2015b), 조선주·민현주(2017)의 연구에서 여성 결혼이민자의 교육수준이 그들의 임금에 정(+)의 효과를 갖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성 비취업자격 임금근로자의 세부 체류자격에 따라 그들이 보유한 교육수준이 월평균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개연성이 존재한다.

비취업자격 임금근로자의 한국어능력이 우수할수록 높은 수준의 월평균임금을 받을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성별을 구분한 분석결과에서도 한국어능력이 월평균임금 수준에 미치는 정(+)의 영향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서 비취업자격 이민자의 취업 결정요인 분석 결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어능력 변수가 지니는 측정오차 문제와 이민자의 소득 함수 추정 시 이민자의 이민국 언어 능력이 지닌 내생성 문제를 지적한 기존 연구(Bleakely and Chin, 2004; Chiswick and Miller, 1995, 2010; 조성호·변수정, 2015b)를 고려할 때 본 연구의 월평균임금 결정요인 분석 결과의 한국어능력 추정치에는 편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sup>19)</sup>

비취업자격 임금근로자의 직무역량과 관련한 대리 지표인 동일 직업 근무 기간이 월평균임금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동일 직업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비취업자격 임금근로자보다 1~3년 미만과 3년 이상인 비취업자격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 같은 동일 직업 근무 기간이 비취업자격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 수준에 갖는 정(+)의 영향은 남

19) 본 연구에서는 국내 여성 결혼이민자의 임금 결정요인을 분석한 조성호·변수정(2015b)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비취업자격 이민자의 월평균임금 결정요인 분석 시 한국어능력의 내생성을 고려하기보다 비취업자격 이민자의 임금근로 선택이 갖는 편의를 제거하는 것을 우선하여 고려하였다.

성 비취업자격 임금근로자와 여성 비취업자격 임금근로자 모두에서 관찰되었다. 한국 노동시장에서의 동일 직업 근무기간은 비취업자격 임금근로자가 국내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 축적한 인적자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나 외국인 근로자의 근속연수가 그들의 임금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한 문영만(2016)의 연구를 고려할 때 비취업자격 이민자가 국내 노동시장에서 취업 활동을 통해 축적한 직무역량이 이들의 노동시장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넷째, 국내 노동시장에서 임금근로 중인 비취업자격 이민자의 종사상지위나 종사 직업, 근무 중인 사업체 규모가 그들의 월평균임금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비취업자격 임금근로자의 성별에 관계없이 종사상지위가 상용근로자인 비취업자격 이민자가 일용근로나 임시근로 상태에 있는 비취업자격 임금근로자보다 높은 수준의 월평균임금을 받을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비취업자격 임금근로자의 종사상지위에 따른 주당 취업 시간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취업자격 임금근로자의 종사 직업이 월평균임금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사무종사자의 경우 서비스·판매종사자에 비해 높은 수준의 월평균임금을 받을 확률이 높았으며, 농림·어업숙련종사자와 단순노무종사자는 서비스·판매종사자에 비해 낮은 수준의 월평균임금을 받을 확률이 높았다. 비취업자격 임금근로자가 근무 중인 사업체 규모가 월평균임금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에서 종사하는 비취업자격 임금근로자와 비교할 때 10~30인 미만, 30~50인 미만, 5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에 종사하는 비취업자격 임금근로자가 더 높은 수준의 월평균임금을 받을 확률이 높았다. 이러한 비취업자격 임금근로자의 종사 직업과 근무 중인 사업체 규모가 월평균임금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비취업자격 임금근로자의 성별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제5장

## 결론 및 시사점

외국인력의 도입은 국내 노동시장의 인력수급불균형 문제를 완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오래전부터 언급되어 왔다. 정부의 외국인력 정책은 크게 전문 외국인력 정책과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으로 구분된다. 전문 외국인력 정책은 해외 우수 인재의 유치와 활용 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은 인구구조 변화와 내국인의 3D업종 기피 현상 등으로 발생하는 산업 간 노동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대표적인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으로 업종별 쿼터 배정 문제나 외국인 근로자의 적정 도입 규모,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이나 이탈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노동시장에서 취업 활동 중인 이민자를 포괄하는 통계자료의 미비와 지역이나 산업별 외국인 근로자 수요를 측정하기 위한 자료와 방법 등의 부재로 고용허가제의 업종별 쿼터 배정 문제나 외국인 근로자의 적정 도입 규모 등에서는 여전히 학문적·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정책의 수립과 보완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국

내에 거주 중인 이민자의 규모, 특성과 경제활동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와 더불어 정부의 외국인력 정책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의 외국인력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업체의 관계자와 외국인력 사업담당자,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표적 집단 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들 통계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와 표적 집단 면접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의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국내 노동시장에서 취업 활동 중인 이민자의 상당수가 취업 관련 이외의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비취업자격 외국인)이나 귀화자라는 점에서 정부의 이민자 대상 노동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 대상으로 취업 관련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취업자격 외국인)과 비취업자격을 외국인, 귀화자를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취업자격 외국인과 비취업자격 외국인, 귀화자의 국내 체류 실태와 경제활동 실태를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의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통계자료의 구축 과정에서 허가된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국내에 거주하면서 취업 활동 중인 미등록외국인의 고려 또한 필요하다.

둘째, 직무역량이 우수한 숙련 외국인 근로자 수요를 고려할 때 단기 순환 원칙에 토대를 두는 정부의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이 외국인력의 양성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부의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은 외국인력의 도입에 따른 내국인 일자리의 잠식과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단기 순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비전문 외국인력이 체류자격 변경을 통해 국내 노동시장에서 취업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과 비전문 취업 자격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에서 직무역량이 우수한 비전문 취업 자격의 외국인 근로자의 연속적 고용을 희망한다는 점에서 외국인력 정책의 보완 과정에서 숙련 외국인력의 양성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와 더불어 직무역량이 우수한 비전문 외국인력의 한국 사회 정착이 일부 산업에서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할 개연성과 노동 환경 개선을 저해할 개연성 또한 존재한다는 점에서 비전문 외국인력의 대규모 유입과 정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부담금제도(levy) 같은 제도의 병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부담금제도의 도입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부담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여러 국가의 사례와 국내 내

외국인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한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영주자나 결혼이민자, 귀화자 같은 정주형 이민자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주형 이민자의 원만한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해서는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비취업자격 외국인과 귀화자의 취업 결정요인 분석 결과에서는 비취업자격 외국인과 귀화자의 우수한 한국어능력이나 사회 네트워크의 존재가 이들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할 때 비취업자격 외국인과 귀화자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사회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관련 사업의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에 거주 중인 비취업자격 외국인과 귀화자의 30% 정도가 대졸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보유한 인적자본을 국내 노동시장에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외국인력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정부의 외국인력 정책이 현장의 수요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노동시장에서 취업 활동 중인 이민자의 상당수가 그들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광·제조업이나 도소매·음식·숙박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은 국내 노동시장에서 외국인력 수요가 광·제조업이나 도소매·음식·숙박업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시점의 이민자의 산업별, 직업별 종사 현황을 근거로 향후 국내 노동시장의 외국인력의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 연구의 표적 집단 면접조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인력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자체별 인구구조와 산업구조, 노동시장 수급 구조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광범위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외국인력의 도입 규모 산정 과정에서 지자체별 외국인력 수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이나 이탈에 관한 문제는 고용허가제의 주요 쟁점으로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이 사업장의 규모나 위치 등 사업장의 특성에 주로 기인함을 확인한 이규용(2020)의 연구와 본 연구의 표적 집단 면접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으로 야기되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근로환경이 열악한 사업체의 일자리 환경 개선이 선

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업장 변경 제도를 악용하는 외국인 근로자 제재와 외국인 근로자의 빈번한 사업장 변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농업·농림어업 및 축산업 경영주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이동에 관한 법적·경제적, 사회통합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고 엄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 참고문헌

- 강동관·최서리·이창원·이철희·김혜진·이은정·조재현(2018), 「외국인 전문인력 입국 및 체류 실태 분석 연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강혜정·이규용(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노동공급 결정요인 분석, 「여성경제연구」, 9(2), 49~73.
- 고용노동부(2017), 『2017 하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 고용노동부.  
 \_\_\_\_\_(2018), 『2018 하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 고용노동부.  
 \_\_\_\_\_(2019), 『2019 하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 고용노동부.  
 \_\_\_\_\_(2021), 『2021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 홈페이지(eps.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제처.
- 권태환·김두섭(1990), 『인구의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김새봄·정진화(2016), 결혼이주여성의 인적자본과 취업: 출신국가에 따른 비교, 「여성경제연구」, 13(1), 21~50.
- 김새봄(2021), 「코로나19 확산과 외국인 노동시장의 변화」, 『고용동향 브리프』, 2021-09, 한국고용정보원.
- 김혜진·이철희(2021), 「외국인력 생산성 제고 방안-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노동시장 성과 분석을 중심으로」, 『BOK 경제연구』, 제2021-1호, 한국은행.
- 문영만(2016), 외국인노동자의 종사상 지위별 임금격차 및 임금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산업노동연구」, 22(2), 107~133.
- 법무부(각 연도),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 통계」, KOSIS.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1),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법무부(2021.8.).
- 양인숙·김선혜(2011),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적자본 및 사회자본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경영경제연구」, 34(1), 237~266.
- 이규용(2016), 「제10장 외국인력정책」, 이해경·이진영·설동훈·정기선·이규용·윤인진·김현미·한건수, 『이민정책론』, 박영사.
- \_\_\_\_\_ (2020), 「제3장 외국인력 도입체계와 사업장 변경: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이규용·최홍엽·주수인, 「외국인력 정책과제 - 개방과 규제 -」, 한국노동연구원.

- 이태정 · 이용수 · 신현구 · 김명수(2013),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상태에 대한 분석 연구, 『한국인구학』, 36(3), 21~44.
- 조성호 · 변수정(2015a), 여성결혼이민자의 고용과 정책적 시사점, 『노동정책연구』, 15(2), 25~55.
- \_\_\_\_\_ (2015b), 여성결혼이민자의 임금합수 추정, 『노동경제논집』, 38(2), 59~87.
- 조선주 · 민현주(2017), 여성결혼이민자의 임금결정요인 분석 : 중국, 중국(한국계), 베트남, 필리핀을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17(3), 45~75.
- 최홍엽(2019), 「제10장 외국인근로자와 전문외국인력」, 이철우 · 이희정 · 강성식 · 광민희 · 김환학 · 노호창 · 이현수 · 차규근 · 최계영 · 최윤철 · 최홍엽, 『이민법』, 박영사.
- 통계청 · 법무부(2020),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MDIS(추출다운로드 일자: 2021.09.24.),
- 통계청 · 법무부(각 연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KOSIS.
- 통계청(각 연도), 「국제인구이동통계」, KOSIS.
- 통계청(2021), 「2020년 국제인구이동통계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보도일시: 2021.07.15.)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EIS, 각 연도), 「외국인통계」, 고용노동부 · 한국고용정보원.
- 행정안전부(2021) 「2020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2020.11.1. 기준)」, 행정안전부(2021.11.)
- 행정안전부(각 연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KOSIS.
- Bleakley, H. and A. Chin(2004), “Language Skills and Earnings: Evidence from Childhood Immigrant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6(2), 481~496.
- Chiswick, B. R., and P. W. Miller(1995), “The Endogeneity between Language and Earnings: International Analysis,” *Journal of Labor Economics*, 13(2), 246~288.
- \_\_\_\_\_ (2010), “Occupational Language Requirements and the Value of English in the US Labor Market,”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23(1), 353~372.

〈부표 1〉 비취업자적 이민자의 월평균임금 결정요인: 1단계(임금근로여부), 2020년

변수	전체	남성	여성
성별(여성=1)	-0.491 *** (0.023)		
연령대_30대 (ref. 연령대_15~29세)	0.245 *** (0.033)	0.246 *** (0.062)	0.195 *** (0.040)
연령대_40대	0.291 *** (0.041)	0.177 ** (0.071)	0.309 *** (0.052)
연령대_50대	0.157 *** (0.044)	-0.026 (0.075)	0.257 *** (0.057)
연령대_60대	-0.414 *** (0.047)	-0.587 *** (0.077)	-0.335 *** (0.064)
건강상태(좋은=1)	0.207 *** (0.024)	0.372 *** (0.039)	0.117 *** (0.030)
한국거주기간_3~5년 미만 (ref. 한국거주기간_3년 미만)	0.119 *** (0.039)	0.013 (0.061)	0.213 *** (0.053)
한국거주기간_5~10년 미만	0.281 *** (0.038)	0.169 *** (0.062)	0.374 *** (0.050)
한국거주기간_10년 이상	0.334 *** (0.042)	0.153 ** (0.066)	0.456 *** (0.055)
교육수준_고졸 (ref. 교육수준_중졸 이하)	0.082 *** (0.026)	0.115 *** (0.044)	0.069 ** (0.034)
교육수준_대졸 이상	-0.003 (0.031)	0.045 (0.051)	-0.022 (0.040)
한국어능력 <sup>1)</sup>	-0.009 (0.012)	-0.026 (0.018)	0.010 (0.016)
혼인상태(배우자 있음=1)	-0.008 (0.029)	0.200 *** (0.049)	-0.139 *** (0.037)
자녀유무(자녀 있음=1)	-0.060 * (0.032)	0.093 * (0.053)	-0.206 *** (0.041)
사회네트워크_한국인 네트워크만 있음 (ref. 사회네트워크_없음)	-0.077 * (0.042)	0.022 (0.066)	-0.125 ** (0.054)
사회네트워크_모국인 네트워크만 있음	0.183 *** (0.037)	0.190 *** (0.056)	0.168 *** (0.050)
사회네트워크_다중네트워크	0.073 * (0.038)	0.177 *** (0.057)	0.040 (0.049)

〈부표 1〉 비취업자적 이민자의 월평균임금 결정요인: 1단계(임금근로여부), 2020년 (계속)

변수	전체	남성	여성
출신국적_한국계 중국 (ref. 출신국적_중국)	0.377 *** (0.040)	0.539 *** (0.065)	0.254 *** (0.052)
출신국적_베트남	0.426 *** (0.039)	0.314 *** (0.076)	0.465 *** (0.048)
출신국적_기타 아시아	0.205 *** (0.038)	0.240 *** (0.065)	0.192 *** (0.049)
출신국적_기타	0.314 *** (0.050)	0.321 *** (0.077)	0.229 *** (0.070)
체류자격_유학생 (ref. 체류자격_재외동포)	-0.898 *** (0.055)	-1.109 *** (0.083)	-0.770 *** (0.076)
체류자격_영주자	0.077 * (0.043)	0.086 (0.066)	0.058 (0.058)
체류자격_결혼이민	-0.279 *** (0.044)	-0.077 (0.089)	-0.299 *** (0.056)
체류자격_기타	-0.640 *** (0.044)	-0.478 *** (0.066)	-0.901 *** (0.064)
체류자격_귀화자	-0.143 *** (0.035)	-0.228 *** (0.051)	-0.098 ** (0.048)
거주지역_서울 (ref. 거주지역_강원·제주)	-0.029 (0.048)	0.045 (0.079)	-0.0815 (0.061)
거주지역_인천·경기	0.053 (0.045)	0.139 * (0.076)	0.007 (0.057)
거주지역_부산·울산·대구·경남·경북	0.038 (0.045)	0.167 ** (0.076)	-0.041 (0.056)
거주지역_대전·세종·충남·충북	0.104 ** (0.048)	0.207 ** (0.081)	0.054 (0.060)
거주지역_광주·전남·전북	0.121 ** (0.049)	0.254 *** (0.087)	0.063 (0.061)
상수항	-0.390 *** (0.087)	-0.713 *** (0.136)	-0.651 *** (0.115)
Select	7,633	3,689	3,944
Non selected	8,940	2,848	6,092
N	16,573	6,537	10,036

주: 1) 한국어능력은 5점 리커트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4개 영역 평균임

2) \*\*\* $p < 0.01$ , \*\* $p < 0.05$ , \* $p < 0.1$

3) ( )는 표준오차

자료: MDIS(통계청·법무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2020) (추출·다운로드일자: 2021.09.24.)

집필진 김새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

## 이민자 고용실태와 정책방향

인쇄 2021년 12월

발행 2021년 12월

발행인 나영돈

발행처 한국고용정보원

27740 충북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 6

☎ 1577-7114

홈페이지 [www.keis.or.kr](http://www.keis.or.kr)

조판 및 인쇄 (사)한국장애인문인복지후원회

☎ 02-2271-2526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전 승인 없이 전재 및 역재할 수 없습니다.

ISBN 978-89-6331-050-3



# 이민자 고용실태와 정책방향



**한국고용정보원**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27740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 6  
T.1577-7114 [www.keis.or.kr](http://www.keis.or.kr)

